

2013년 지방재정공시



목 차

◆ 지방재정 공시제도

I. 개요	1
II.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2
III.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6
IV.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9

◆ 재정공시문

1. 공통공시 총괄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4
2-2. 세출결산	16
2-3. 중기지방재정계획	19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20
3-2. 재정자주도	21
3-3. 재정력지수	22
3-4. 통합재정수지	23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24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26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6
4-4. 일시차입금 현황	28
4-5. 보증채무 현황	29
4-6. 지방공기업 부채	30

5. 채권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32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33
6-3. 인건비 집행현황	34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5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36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6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8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39
6-9. 연말지출 비율	40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현황	41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42
7-2. 민간단체보조금	43
7-3. 행사축제경비	45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	46
8-2. 공유재산 및 물품	49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51
8-4. 지방공기업 현황(신규)	53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54
9-2. 재정분석 결과(2011회계연도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55
9-3. 지방세 지출예산	59
9-4.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60
9-5.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61
9-6. 원가회계정보	62

10. 감사 및 평가결과

- 10-1. 감사결과 62
-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62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63
- 11-2. 지방채 발행사업 74
- 11-3. 민간투자사업 74

◆ 특수공시 대상 사업 75

- 1. 제7호 달뜨는집 건립 76
- 2. 소하천 시설보수 사업 78
- 3.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80
- 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82
- 5. 영암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84
- 6.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6
- 7.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88

◆ 부록 90

- [별첨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2년 12.31기준) 91
- [별첨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2012년 기준) 94
- [별첨3]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년) 97
- [별첨4]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2012년) 101
- [별첨5] 민간행사보조 집행현황(2012년) 120
- [별첨6] 기금회계 집행현황(2012년) 126
- [별첨7] 행사·축제 세부 원가회계 정보 143
- [별첨8]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150
- [별첨9]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별책)

1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일간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1 공시범위 확대

■ 정부3.0의 실현을 위한 공시항목 확대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공시 추가

- 장래 재정부담이 큰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 및 각 사업별 추진상황 공시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추가

- 현행 자치단체 채무 외에 자치단체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 및 민간투자사업의 전년도 재정부담액(임대료, 운영비 등) 추가
-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실제 발행액(최근 5년) 추가

○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관심 항목 추가

-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청사관리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 등

○ 지방공기업 현황 추가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공사, 공단)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인력, 경영평가결과 등 신규 공시

○ 원가회계정보 공개

- 원가회계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 관심이 높은 단위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산출·공개('13년 행사·축제, '14년 청사·주차장 관리 등)

○ 신규 재정제도 반영을 위한 공시항목 신설

– ‘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시범 반영

※ 재정공시가 전년도 결산 기준임을 감안, 금년은 ‘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범 반영하고, ‘14년 이후 본격 공시(성과예산제도 포함)

■ 비교·판단 정보의 확대

○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연도(최근 5년)간 추이, 주민1인당 지표 등 비교·판단을 위한 정보 확대로 당해 단체의 수준과 위치파악에 도움

* 동종 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의 6개 유형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 재정력 지표 추가

■ 통합공시 항목 확대

○ 통합공시 항목을 현행 9개에서 16개로 확대

〈 통합공시 추가항목(7개) 〉

- (건전성) 지자체 부채, 지방공기업부채
- (재정력)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효율성) 사회복지, 지방세비과세·감면, 연말지출
- (책임성)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 재정공시 편제방식 개선

■ 3단계 편제방식 및 항목분류 개선

○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단계(공시문, 총괄)→2단계(공시항목을 11개로 유형화)→3단계(세부항목별 내용) 편제방식으로 개선

– 항목의 내용이 많은 경우(예, 재무보고서 등)는 총량만 표시하고 세부 내역을 별도 첨부 또는 해당 정보의 위치로 링크

○ 종전의 항목 분류는 ‘총량적 재정운용결과’, ‘재정운용 중요사항’ 등 법령·행정용어 중심이었으나,

－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11개 유형*으로 재분류

* ① 총괄표(주요항목 전년대비 및 동종단체와 비교), ② 살림규모, ③ 재정여건, ④ 채무·부채, ⑤ 채권, ⑥ 행정운영경비, ⑦ 복지 및 민간지원, ⑧ 기금 및 공기업, ⑨ 재정성과, ⑩ 감사평가결과, ⑪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공시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

－ 가급적 초기화면에 배치하거나 2단계 이내로 축소 또는 배너, 일정기간 팝업창 설치 및 자치단체별 공시 위치 통일 검토(예산결산 관련 분야 등)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공시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코너 신설 또는 기존의 질의응답 관련 코너를 안내

－ 공시 첫 화면에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의견제시 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안내

○ 공시에 대한 열람·조회 기능 구현

－ 가능한 열람·조회 기능을 구현하여 주민들의 이용정도 파악

※ 향후 재정공시 접근성, 충실도 등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방안 검토

(참고)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2012년			2013년 개편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공통공시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및 재정 운영 중요사항 총괄표	공통공시	1. 총괄	2. ~ 11. 총괄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 결산 ②-1 지방채무 ②-2 일시차입금 ③ 채권 현재액 ④ 기금운용 현황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⑦ 통합재정수지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2. 살림규모	· 세입·세출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4.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채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5. 채권				· 채권 현황	
재정운영 중요사항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인건비 - 업무추진비 - 의회경비 - 행사축제경비 - 민간단체 보조금 - 기본경비 - 출연금/출자금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지출예산 - 맞춤형 복지비 - 사회복지분야 집행 - 보증채무 - 중기지방재정계획	6. 행정운영 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7.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8. 기금, 지방 공기업		· 기금현황(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9.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원가회계정보	
		10.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특수 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특수공시	2012년과 동일	

▶ 굵은 글씨는 2013년에 추가된 공시항목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3개 세부항목

● 공통공시의 범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 지방채권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중기지방재정계획
 - ▶ 보증채무 현황
 -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 청사관리운영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 원가회계정보
 -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현황
 - ▶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
 -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 연말지출 비율
 -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4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

IV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

○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통보('06. 2),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완료('06. 8)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위원회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지방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을 포함

－ 위원장은 가급적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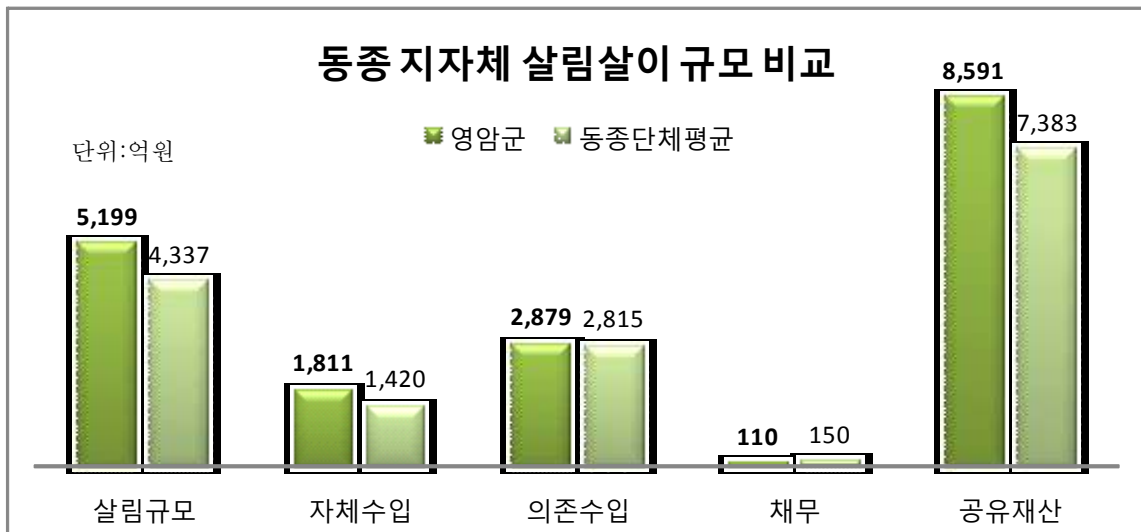
○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2013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영암군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영 암 군 수 (인)

- ◆ 우리 영암군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199억원으로, 전년대비 36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11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3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879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
-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110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184천원 입니다.
 - 공유재산은 '12년도에 토지의 4개항목에서(63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의 1개항목(16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59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살림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존재원(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지방채 및 예치금의 실제 수납액 기준임(2012회계연도부터 기금 추가됨)
- ※ 동종단체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7), 도(9), 50만 이상 시(15), 50만 미만 시(59), 군(84), 자치구(69) 6개 유형으로 구분

- ◆ 우리 군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337억원) 보다 86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420억원)보다 391억원이 많 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815억원)보다 64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50억원)보다 40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74천원)보다 90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7,382억원)과 비교하여 1,209억원이 많습니다.
- ◆ 우리 군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24%이며 (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62% (전국 평균 77.5%)입니다.
- ◆ 우리 군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6억원의 흑자 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하면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채무액은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세입증가폭이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지향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전화번호 : 061-470-2308
 이 메 일 : keykey12@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우 리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5,199	4,832	367	4,337	3,884	454
	세 출	4,291	3,927	365	3,318	3,050	269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7.24	25.09	2.15	17.28	18.19	△0.91
	재정자주도	65.62	62.76	2.86	63.58	63.3	0.28
	재정력지수	30.4	31.89	△1.49	21.36	22.56	△1.2
	통합재정수지	37	11	26	37	28	10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110	128	△18	150	185	△35
	지자체 부채	229	178	51	316	320	△4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0	0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0	8	2
	지방공기업 부채	43	59	△16	46	29	17
④ 채권	채권 현재액	47	41	5	69	70	△2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3	32	1	24	23	1
	청사관리운영	0	0	0	0	0	0
	공무원 인건비	388	366	23	370	343	27
	업무추진비	4	4	0	4	3	0
	단체장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5	5	△0	4	4	0
	의원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9	8	1	8	7	1
	연말지출비율	200	177	23	158	154	4
	지방세세외수입 채납액	32	36	△4	55	51	4

재정운영 결과			우 리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493	475	18	458	436	22
	민간단체 보조금		85	83	2	88	84	3
	행사축제경비		45	29	15	32	28	4
⑦-1 기금	기금 현재액		501	509	△8	108	103	5
⑦-2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8,591	8,121	470	7,383	6,616	767
	물품 현재액		72	69	3	53	58	△5
⑦-3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 집행액		73	13	59	19	18	1
⑦-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 무 보 고 서	자산총계	24,218	23,296	922	17,244	16,052	1,192
		부채총계	229	178	51	316	320	△4
		수익총계	3,389	3,198	190	3,218	2,872	346
		비용총계	2,776	2,456	320	2,291	2,099	192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 영암군 동종단체로는 84개 자치단체입니다.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영암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영암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9,925	407,663	51,587	5,916	54,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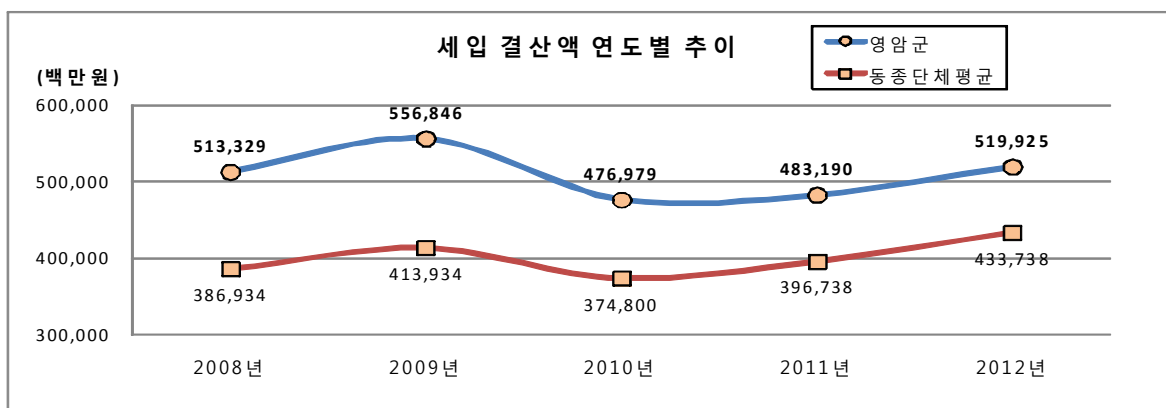
-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지난 5년간 우리 영암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5,133억원에서 2012년 5,19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13,329	556,846	476,979	483,190	519,925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 세입결산액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25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10억원이 증가되어 우리 군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비중	2009년	비중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합 계	397,742	100	439,269	100	365,448	100	381,508	100	407,663	100
지 방 세	42,384	10.66	50,103	11.41	40,726	11.14	54,466	14.28	55,982	13.73
세외수입	98,072	24.66	122,942	27.99	94,966	25.99	80,772	21.17	89,601	21.98
지방교부세	154,659	38.88	125,503	28.57	116,987	32.01	122,236	32.04	134,832	33.0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631	0.91	2,586	0.59	3,866	1.06	4,410	1.16	5,364	1.32
보 조 금	97,896	24.61	132,135	30.08	108,903	29.80	119,624	31.36	121,885	29.90
지방채·예치금회수	1,100	0.28	6,000	1.37	0	0.00	0	0.00	0	0.0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2012년도 우리군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산정항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예산확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년대비 세입규모는 6.85%(26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42,384,186	50,102,540	40,726,065	54,466,406	55,982,245
인구수	60,106	59,837	60,082	60,139	59,99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05	837	678	906	933

▶ 인구수는 2012.12.31기준 (별첨1)

2-2. 세출결산

- ☐ 1년 동안 우리 영암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9,135	334,781	37,440	2,154	54,759

-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 지난 5년간 우리 영암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3,885억원에서 2012년 4,29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88,542	462,970	400,536	392,665	429,135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천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88,322	100	356,932	100	296,983	100	301,625	100	334,781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7,034	5.91	16,345	4.58	14,316	4.82	15,379	5.10	17,856	5.33
	공공질서안전	1,361	0.47	8,669	2.43	5,868	1.98	6,015	1.99	16,394	4.90
	교 육	2,170	0.75	3,644	1.02	3,141	1.06	3,925	1.30	9,376	2.80
	문화 및 관광	21,243	7.37	22,154	6.21	27,131	9.14	26,034	8.63	24,780	7.40
	환경보호	32,610	11.31	34,248	9.60	16,292	5.49	24,042	7.97	21,968	6.56
	사회복지	40,412	14.02	57,139	16.01	45,431	15.30	47,485	15.74	49,283	14.72
	보 건	5,444	1.89	5,344	1.50	4,262	1.44	4,381	1.45	3,284	0.98
	농림해양수산	70,436	24.43	83,459	23.38	83,253	28.03	71,999	23.87	82,535	24.65
	산업·중소기업	3,923	1.36	5,223	1.46	5,615	1.89	2,402	0.80	2,605	0.78
	수송 및 교통	15,406	5.34	17,103	4.79	15,026	5.06	18,422	6.11	17,659	5.27
	국토·지역개발	37,751	13.09	63,208	17.71	35,652	12.00	39,477	13.09	43,385	12.9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0,533	14.06	40,394	11.32	40,995	13.80	42,064	13.95	45,656	1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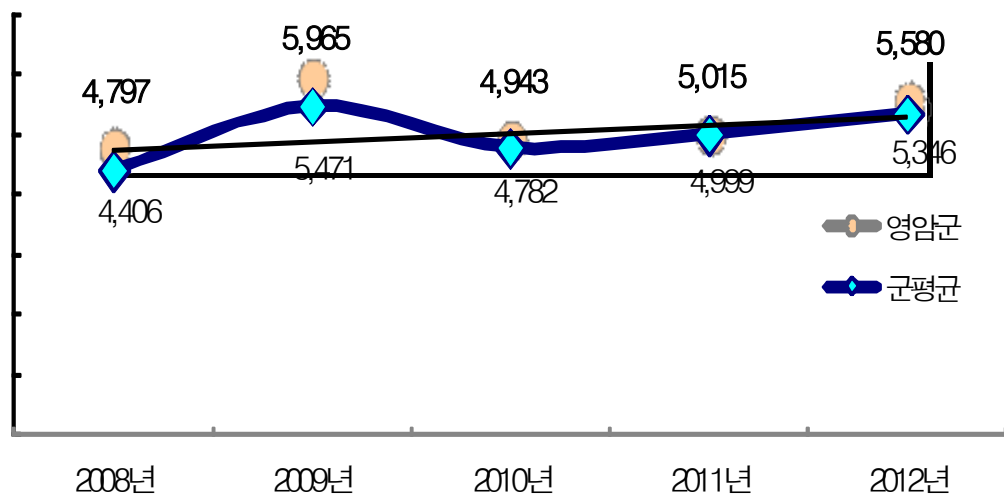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88,322,463	356,931,938	296,982,797	301,624,752	334,781,297
인구수	60,106	59,837	60,082	60,139	59,997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4,797	5,965	4,943	5,015	5,580

(단위 : 천원)



☞ 세출결산액 주요 증감원인을 보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수송 및 교통 등에서 52억원 감소 지출되었고,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등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105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31억원(9%)이 확대 지출 되었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87,367	396,074	403,576	417,634	432,943	2,037,594	2.80
자 체 수 입	110,221	115,207	113,045	117,067	121,983	599,523	2.60
의 존 수 입	277,146	280,868	290,531	300,567	310,960	1,460,072	2.9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② 세 출	387,367	396,074	403,576	417,634	432,943	2,037,594	2.80
경 상 지 출	68,151	74,814	80,197	89,454	88,460	401,076	6.70
사 업 수 요	319,216	321,260	323,379	328,179	344,483	1,636,517	1.9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text{※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 100$$

(단위 : 억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3,874	3,961	4,036	4,176	4,329	20,376	2.8%
증가율	(2.2)	(1.8)	(3.4)	(3.6)			

$$\Rightarrow [(100.5 / 79.5) ^ (1/4) -1] * 100 = 6.04\%(\text{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27.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27.24	358,814	97,746	261,068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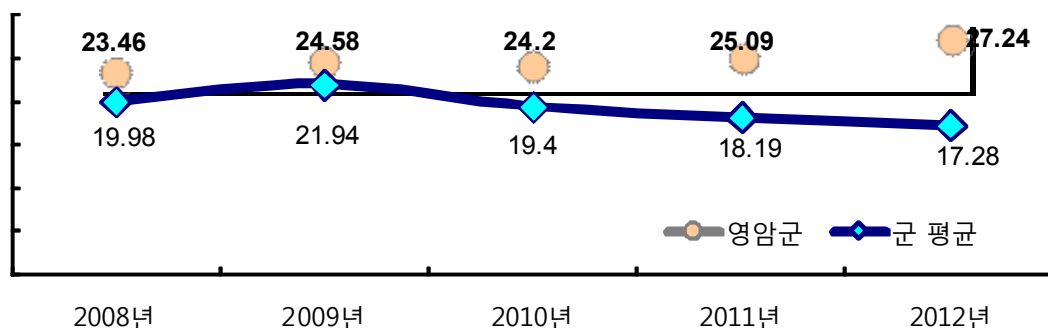
- ☞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원은 갈수록 악화되고 복지서비스는 확대되면서 국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많아지고 예산규모는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23.46	24.58	24.20	25.09	27.2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 평균대비 양호한 편이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지방세징수를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5.62%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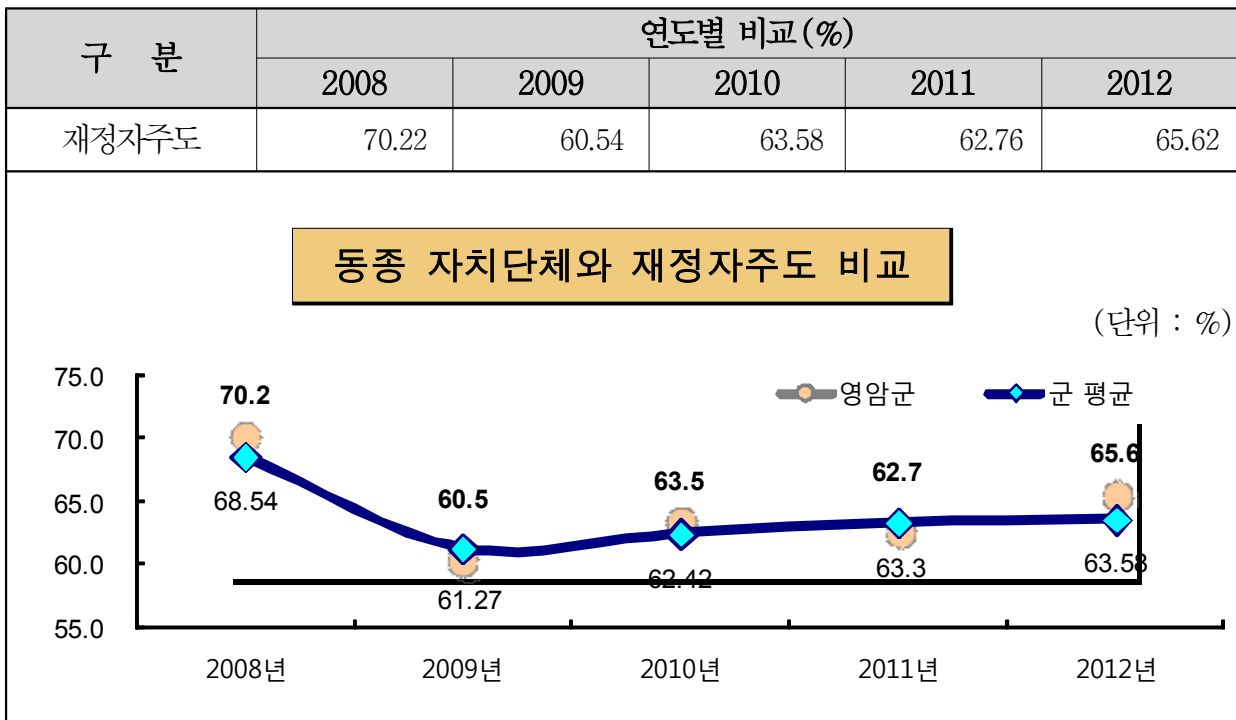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5.62	358,814	235,457	123,357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총 세입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977억원(27.24%)이고 자주재원은(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1,377억원(38.38%)이며 보조금은 1,234억원(34.37%)으로 우리군의 재원활용능력이 65.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 평균 대비 높은편이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활용능력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 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영암군의 재정력지수는 3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30.40%	184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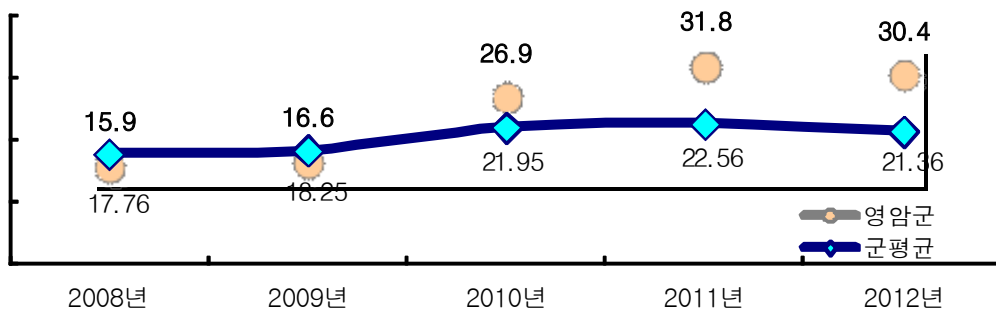
- ▶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15.98%	16.62%	26.97%	31.89%	30.4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 우리군의 재정력지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며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력지수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영암군의 통합재정수지는 3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 +F	통합재정 수지 2 $I=G-(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369,271	396,100	239	1,011	772	31,282	396,872	△27,601	3,681
일반회계	330,597	345,371	0	0	0	26,379	345,371	△14,773	11,605
기타 특별회계	1,592	4,224	143	511	367	3,076	4,592	△3,000	75
공기업 특별회계	34,868	43,219	0	0	0	1,826	43,219	△8,351	△6,524
기 금	2,213	3,284	95	500	404	0	3,689	△1,475	△1,475

-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28,551	△32,079	△22,331	△25,847	△27,601
통합재정수지 2	5,339	△823	1,287	1,061	3,681

- ☞ 2012년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8,732백만원 증가한 396,87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3,681백만원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 통합재정수지가(-)로 나타나는 이유는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이 제외되어 순수재정 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영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806	△1,766		1,766	11,040	59,997	184
일 반 회 계		6,940	△170		170	6,770	59,997	113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5,866	△1,597		1,597	4,269	59,997	71
	상수도공기업	2,554	△554		554	2,000	59,997	33
	하수도공기업	3,312	△1,043		1,043	2,269	59,997	38

-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원금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일반회계 채무잔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지방교부세감액보전) 60억원, 군청사 증축 7.7억원이며
- ☞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잔액은 신북 상수도사업 1,370백만원, 삼호 상수도사업 630백만원,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242백만원, 대불 하수슬러지사업 2,027백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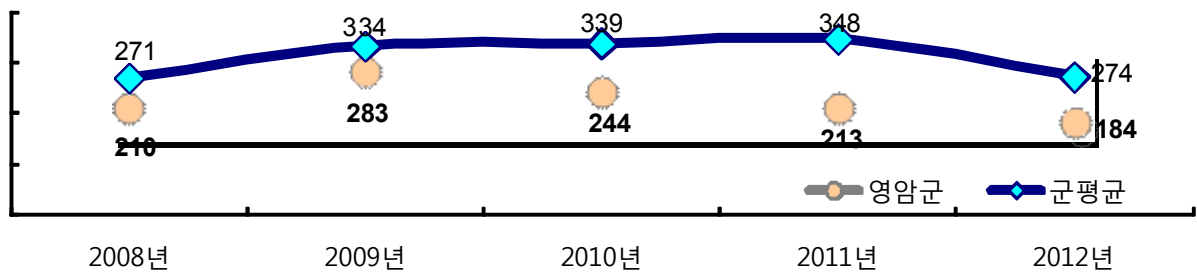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12,678	16,955	14,633	12,806	11,040
인구수(명)	60,304	59,837	60,082	60,139	59,997
주민1인당채무(천원)	210	283	244	213	184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등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분양책 추진, 세입결손으로 인한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규모가 전년대비 42억원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채무상환계획과 조기상환등을 통해 우리군 채무비율 및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채무는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3,800	17,200	21,100	17,300	14,500
발행액(B)	0	6,000	0	0	0
발행비율(B/A*100)	0	34.88%	0	0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사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22,928	17,800	5,128	
자산(B)	2,421,820	2,329,637	92,183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95%	0.76%	0.19%	

-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BTL 임대료	해	당	없	음
BTO 운영비				

▶ 2012, 201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 사업							
	◇◇◇ 사업							
	:	해	당			없		음
BTO 사업	◇◇◇ 사업							
	◇◇◇ 사업							
	:							

●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해	당	없
	공기업특별회계			음
	〇〇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5. 보증채무 현황

-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영암군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 '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26,531	401,712	342,767	336,029	379,009
보증채무현재액	해	당	없	음	
비율 (%)	0	0	0	0	0

4-6. 지방공기업 부채

☐ 우리 영암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4,334	231,353	1.87	5,938	207,315	2.86
직영 기업	소 계	4,334	231,353	1.87	5,938	207,315	2.86
	상수도	2,065	106,119	1.95	2,624	96,453	2.72
	하수도	2,269	125,235	1.81	3,313	110,862	2.99

▶ '12년, '1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상수도 공기업 부채는 2001년, 2002년 삼호·신북 상수도 신설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 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상환으로 인하여 총 대여금액 55억원 중 2012년말 현재 원금 3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 하수도 공기업 부채는 2004년 대불하수 슬러지 사업으로 인하여 대여금액이 29억 증가하여 총 대여금액이 104억원이었으나, 이후 꾸준한 상환으로 2012년말 현재 원금 82억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 상수도 부채는 2017년, 하수도는 2019년까지 연도별 부채상환 계획에 의거 대여금액 전액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5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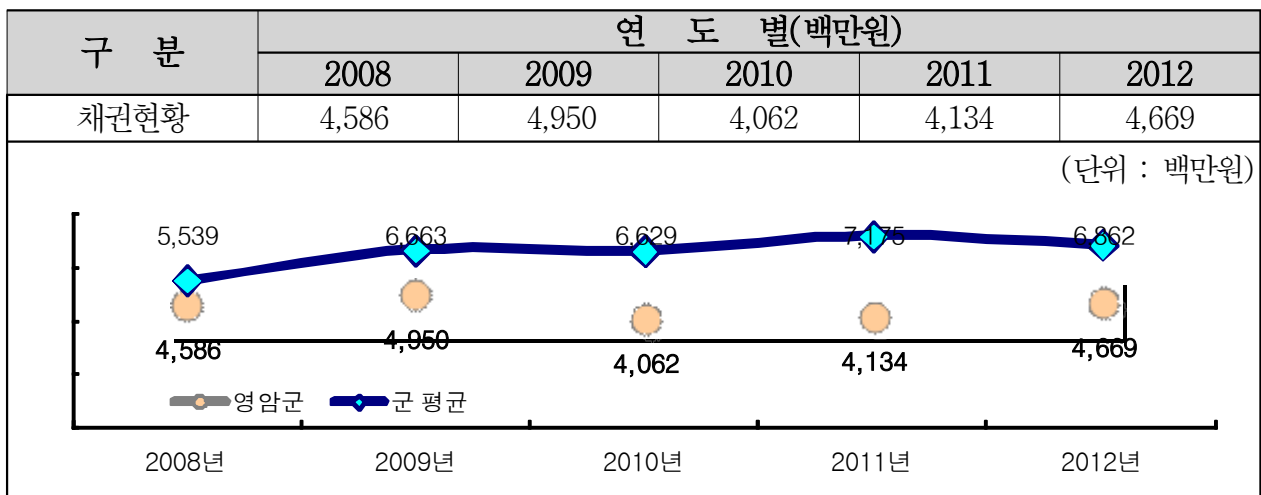
5-1. 채권 현황

-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134	535	1,113	578	4,669
일 반 회 계		3,144	242	442	200	3,387
특별회계	소 계	479	△112	104	217	367
	주택사업특별회계	115	△47	0	47	68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364	△65	104	170	299
기금회계	소 계	510	405	567	162	915
	농업발전기금	510	405	567	162	915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채권의 종류별 · 사업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채권 : 사무실 임대 200백만원
- 융자금 채권 : 학자금 대여 3,186백만원, 주택융자 68백만원, 생활안정자금 299백만원, 농업발전기금 914백만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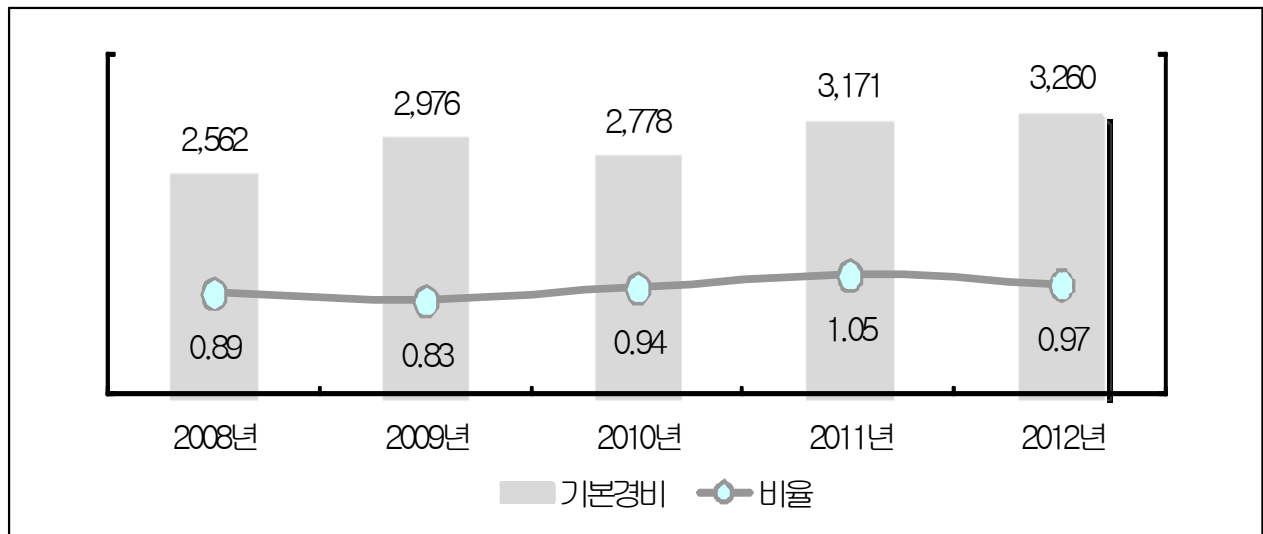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4,781	3,260	0.97%	
일반운영비	334,781	1,671	0.50%	
여 비		1,145	0.34%	
업무추진비		315	0.10%	
직무수행경비		73	0.02%	
자산취득비		56	0.0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88,322	356,932	296,983	301,625	334,781
기본경비	2,562	2,976	2,778	3,171	3,260
비율 (%)	0.89%	0.83%	0.94%	1.05%	0.9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 2011년 주요 증가원인은 당초 정책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기본경비에 편성됨에 따라 증가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지출이 증가 하였으나, 이는 공공운영비 인상에 따른 지출액이 증가되었고, 자산취득 및 여비에서는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 우리 영암군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85㎡가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에 + 3천2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영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암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4,283㎡	4,468㎡	△185㎡	32

-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영암군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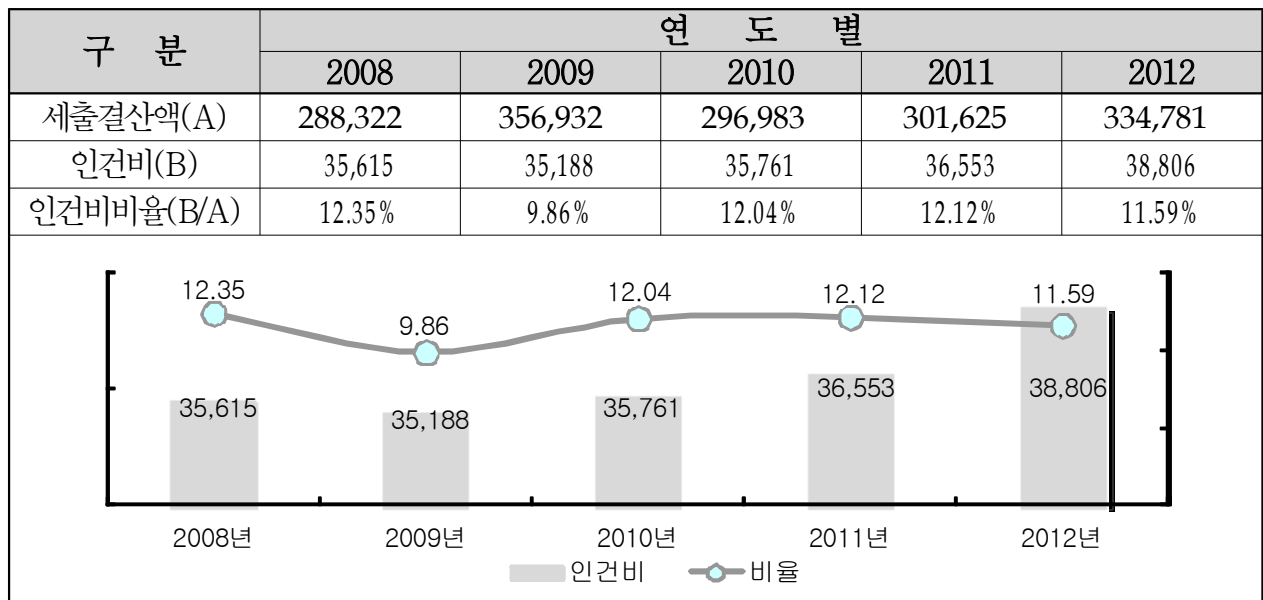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334,781	38,806	11.59%	
인건비(101)	334,781	31,255	9.34%	
직무수행경비(204)		1,081	0.32%	
포상금(303)		1,638	0.49%	
연금부담금 등(304)		4,832	1.44%	

-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1년 대비 2012년 지출액 증가는 인건비 4.9%인상분이 반영되어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영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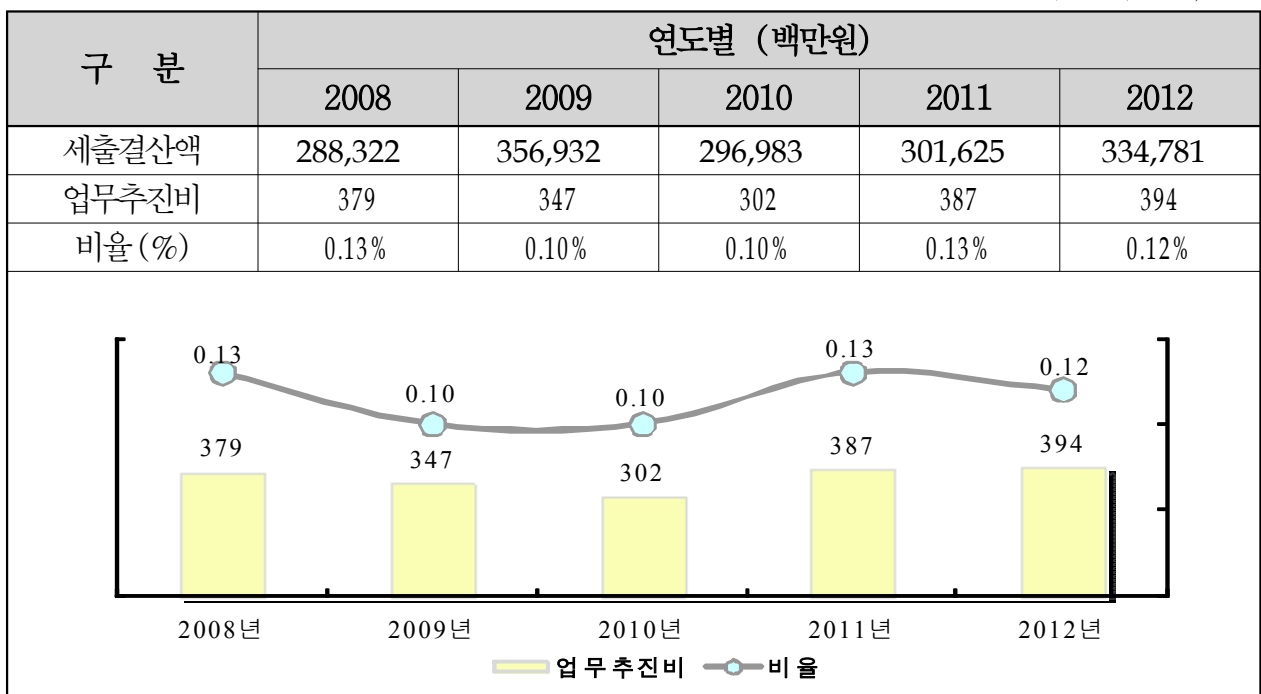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34,781	394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34,781	16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4	0.07%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2012년도 태풍피해로 재해복구에 참여한 유관기관 격려차 업무추진비 지출 집행 증가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3)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합 계	10건		16	47
03.12~03.16	영암 용두레권역 선진지견학	일본	1	1
05.14~05.24	제12기중견간부양성과정	미국	2	11
07.11~07.20	선진AI방역시스템 시찰	영국,프랑스,이탈리아	1	5
07.11~07.21	산림자원활용,경관조성,산림복지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연수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1	5
08.29~09.03	베트남 탄라이 어린이집 준공식 참석	베트남	4	5
09.10~09.14	2012신북 전댕들권역 지역역량당화(S/W)사업국외 선진지견학	일본	1	1
10.16~11.06	제13기 중견간부양성과정	페루,브라질	2	12
11.01~11.05	2012년 왕인박사 일본모전제 참석	일본	1	2
11.04~11.10	제6기 광주전남 지방자치아카데미 해외연수	일본	3	4
11.03~11.07	여성자치대학 제5기 심화과정 해외연수	중국	1	1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34,781	453	0.14%	9	50

-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원 정원 : 9명 ('12.12.31 현재, 의원정수 별첨)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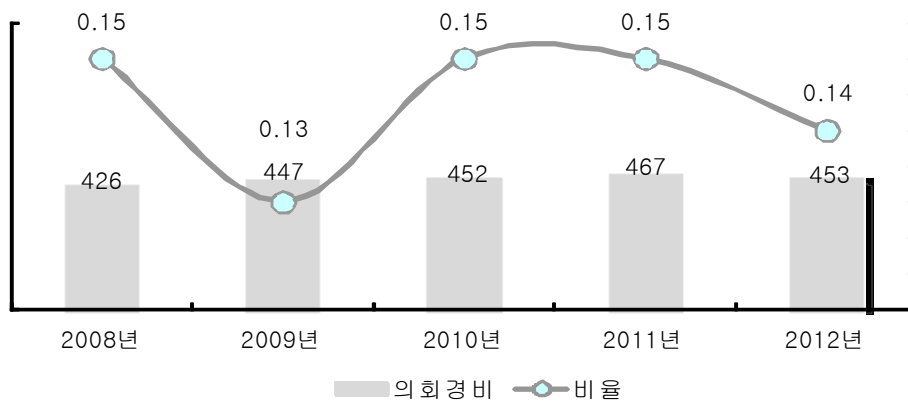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288,322	356,932	296,983	301,625	334,781
의회경비(백만원)	426	447	452	467	453
의원 정수(명)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5%	0.13%	0.15%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47	50	50	5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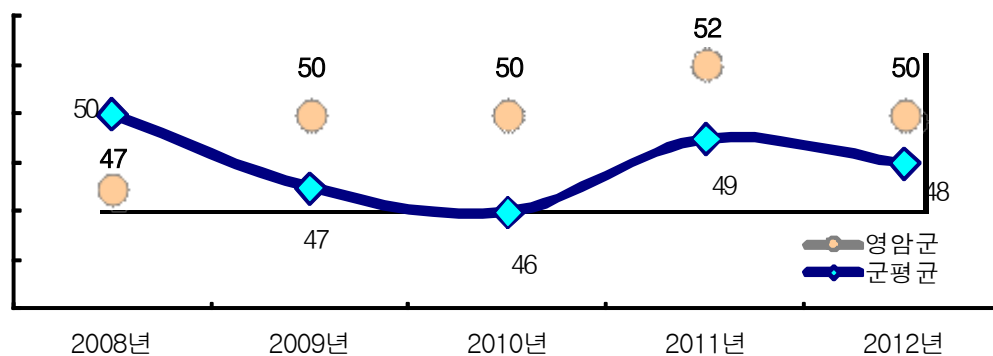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8	9	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별첨)

☞ 우리군 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2년 태풍 불라벤피해로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의회 국외연수 취소 위약금 4,794천원과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석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7,975천원이 지출되었고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886천원입니다.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9.17~9.22	영암군의회 국외연수	대만, 홍콩	7	12
9.17~9.22	영암군의회 국외연수 취소	대만, 홍콩	△7	△7
11.2~11.5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석	일본오호사카	2	3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영암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867	334,781	852	0.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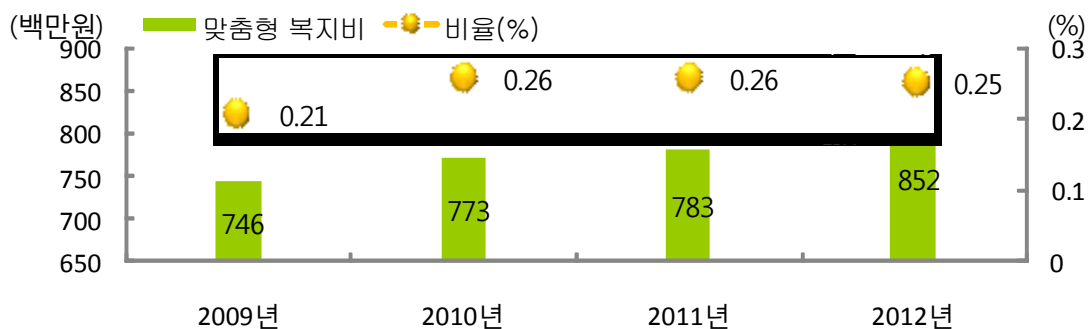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 ▶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A)	831	834	855	867	
세출결산액(B)	356,932	296,983	301,625	334,781	
맞춤형 복지비(C)	746	773	783	852	
비율(%) (C/B)	0.21	0.26	0.26	0.25	
1인당 평균배정액(C/A)	0.898	0.927	0.916	0.983	

맞춤형 복지비 집행현황



6-9. 연말지출 비율

- ☐ 우리 영암군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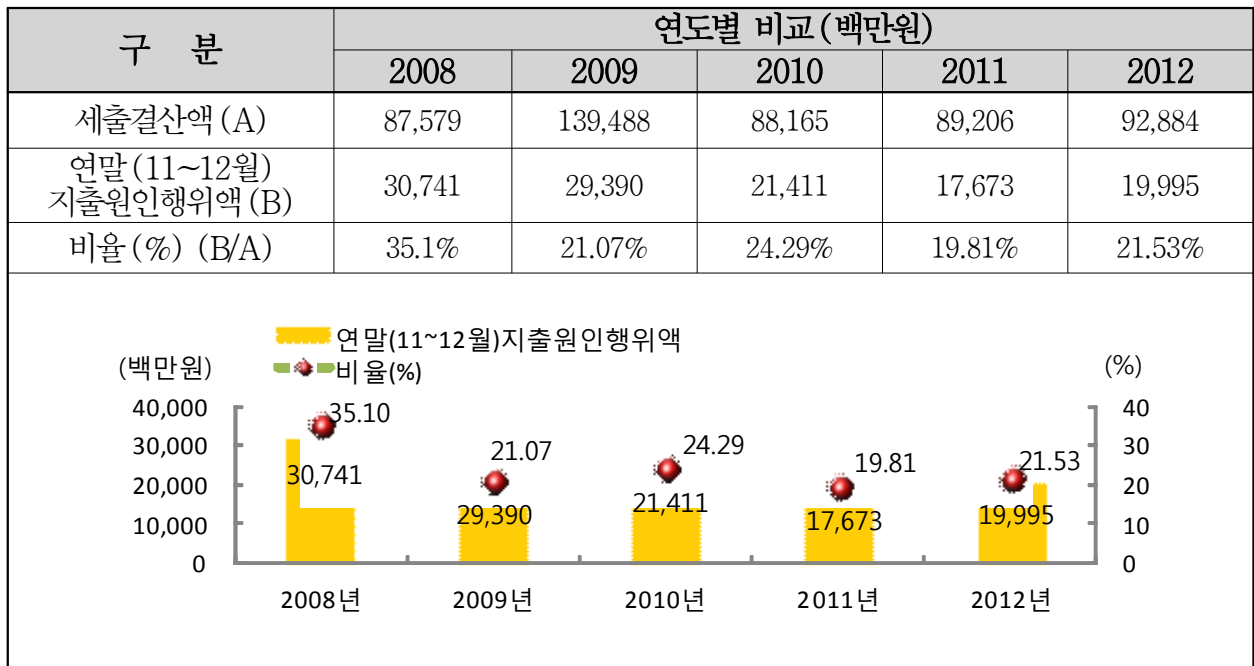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2,884	19,995	21.53%
시설비 (401-01)	92,135	19,860	21.56%
감리비 (401-02)	392	53	13.56%
시설부대비 (401-03)	312	81	26.0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5	1	2.4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 지방재정균형집행 추진으로 인한 연말지출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도에는 태풍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증가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3,216	3,593	△377
지방세	1,774	2,057	△283
세외수입	1,442	1,536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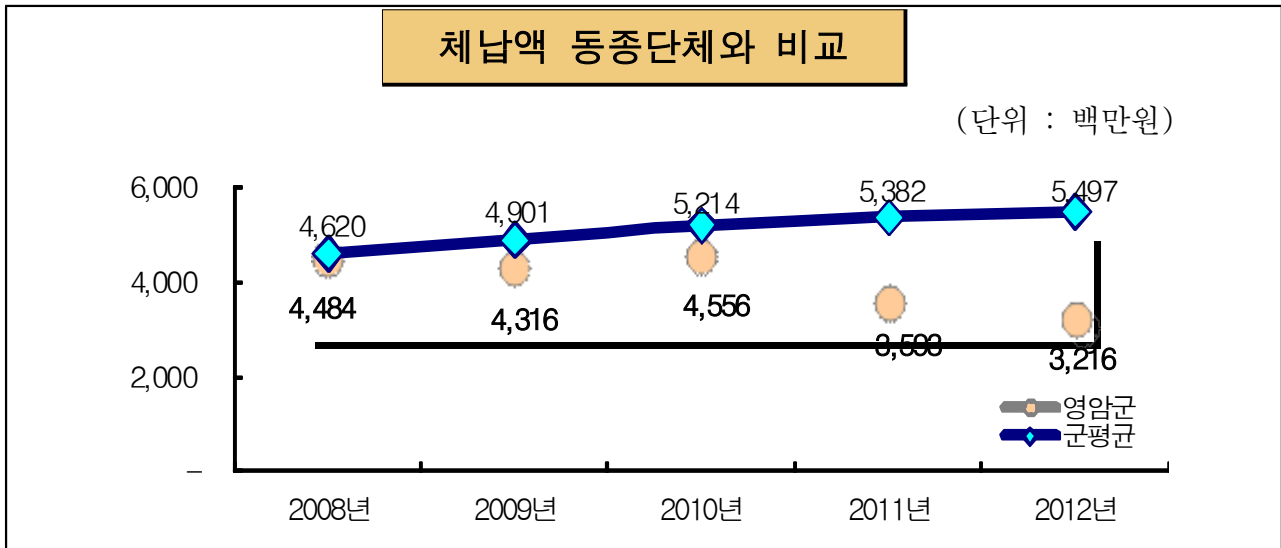
☞ 우리군 체납액중 지방세 분야는 2012년 자동차세 체납액이 513백만원, 재산세 253백만원, 지방소득세 154백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1,033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중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 누증 방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과 예금압류,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공매추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상반기에 비교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액이 130백만원이 증가 되어 징수율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484	4,316	4,556	3,593	3,216
지방세	1,973	2,613	2,436	2,057	1,774
세외수입	2,511	1,703	2,120	1,536	1,442



☞ 우리 군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지방세 체납액 지표가 동종단체 평균값보다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9,283	7,736	6,693	13,408	17,674	1,305	407	2,052	10
국 비	28,208	7,736	3,763	5,879	12,312	693	41	0	0
시·도비	8,386	5,521	1,190	3,973	1,944	111	25	440	0
시·군·구비	12,689	704	1,740	3,556	3,418	501	341	1,612	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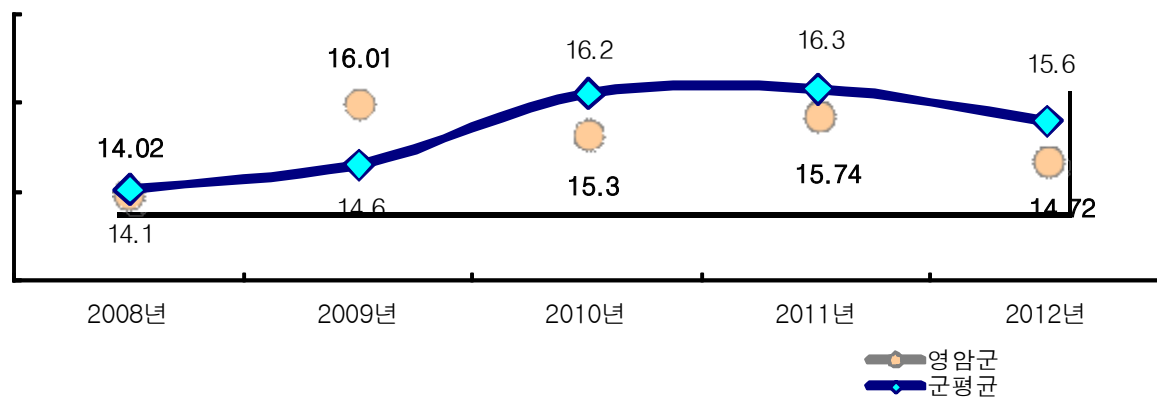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88,322	356,932	296,983	301,625	334,781
사회복지분야(B)	40,412	57,139	45,431	47,485	49,28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02	16.01	15.3	15.74	14.72
인구수(C)	60,106	59,837	60,082	60,139	59,99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1	1	1	1	1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우리군 사회복지분야 주요 증감사유로는 영유아가구 보육료 전액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소폭 증가 하였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 비율은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동종단체에 비해 적어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 다음은 영암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영암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34,781	8,533	2.55%	
민간경상보조 (307-02)	334,781	5,308	1.59%	
사회단체보조 (307-03)		378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847	0.8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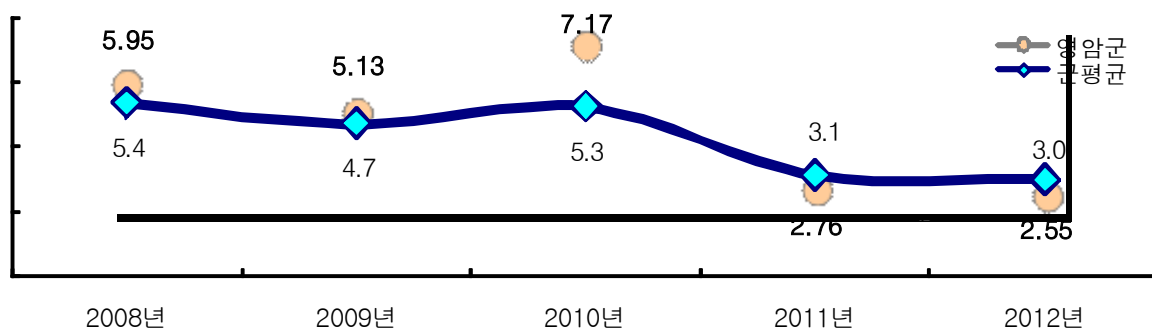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88,322	356,932	296,983	301,625	334,781
민간단체 보조금	17,160	18,299	21,294	8,338	8,533
비율 (%)	5.95%	5.13%	7.17%	2.76%	2.55%

-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 2011년도 보조금 지원규모가 감소한 요인은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부 통계목 변경과 민간경상보조 한도액 실시 등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첨4)

7-3.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12년 한해동안 군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4,781	4,479	1.3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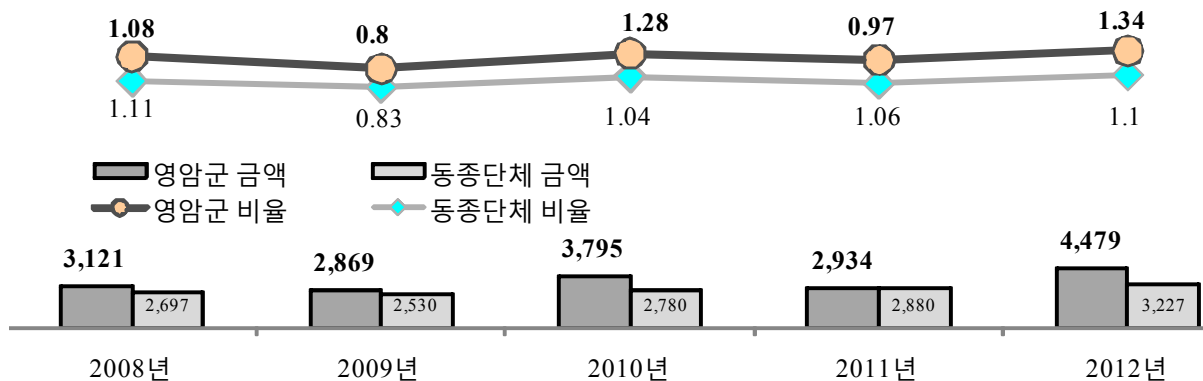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88,322	356,932	296,983	301,625	334,781
행사·축제경비	3,121	2,869	3,795	2,934	4,479
비율 (%)	1.08%	0.8%	1.28%	0.97%	1.34%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우리 군 행사축제성경비 지출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행사축소 및 통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12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첨5)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영암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0,914	△788	3,845	4,633	50,126	
체육진흥기금	493	22	22	0	515	
농업발전기금	2,407	△69	401	470	2,338	2016
중소기업육성기금	3,203	622	622	0	3,825	2016
여성발전기금	489	122	122	0	611	2016
사회복지기금	926	236	248	12	1,162	
식품진흥기금	68	1	11	10	69	해당없음
환경보전기금	509	19	19	0	528	
재난관리기금	1,144	81	814	733	1,225	해당없음
대불하수종말처리 장증설사업적립금	41,674	△1,823	1,586	3,409	39,851	2016

-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우리 군에서 설치한 기금은 총 9개기금으로 기금별 조성액을 보면은 일반회계 출연금은 4개 기금에 1,306백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846백만원으로 2012년도 적립액은 3,845백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은 4,633백만원 입니다.

❖ 연도별 기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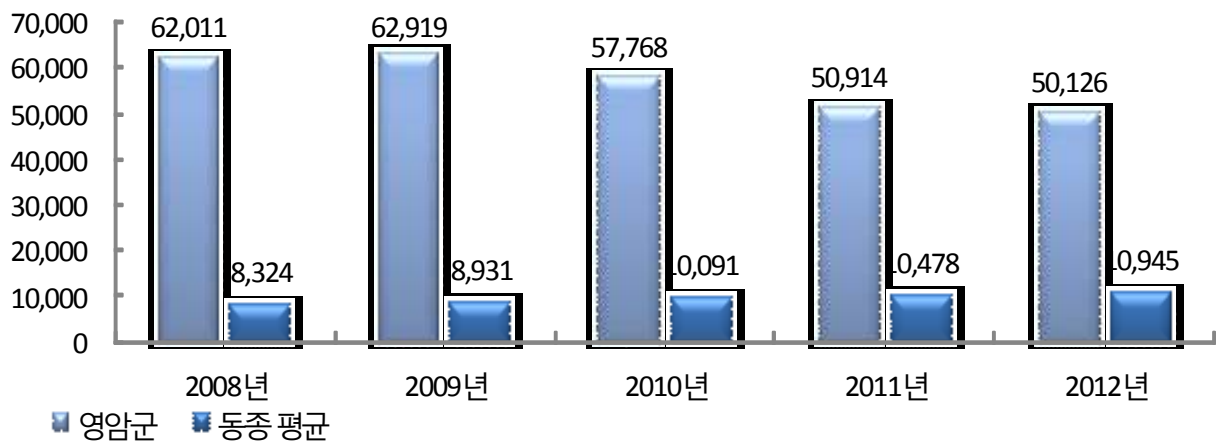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62,011	62,919	57,768	50,914	50,12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우리군의 기금조성액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 43,245백만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에 86.27%를 차지하고 있어 동종단체에 비해 기금보유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암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영암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비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90.19	81.13		
공 통	일반기타특별회 계 의존율	99.3	99.57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5.6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50	44.71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 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92.11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 별 기 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100	93.6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을	98.09	92.1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 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84.73	83.19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 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경비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 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0	90.4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 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투명 성	100	93.6	100	기금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 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우리군의 기금성과분석결과 동종단체에 비해 기금관리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항목에서는 주민공개친화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혜자선정 투명성 등에서 동종단체에 비해 기금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일반 및 기타회계 의존율, 통합관리기금 운영 등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62,734	812,087	19,851	63,551	1,302	16,508	681,283	859,129	
토 지	30,014	485,667	947	17,237	1,278	15,655	29,683	487,249	
건 물	310	79,648	66	9,559	24	853	352	88,354	
입목죽	605,430	72,128	18,214	543	0		623,644	72,671	
공작물	25,549	163,211	594	36,072	0		26,143	199,282	
기계기구	121	683	0	0	0		121	683	
선박	0	0	1	24	0		1	24	
무체재산	1,310	10,750	29	116	0		1,339	10,866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2012년도 공유재산은 토지 1,582백만원, 건물 8,706백만원, 공작물 36,072백만원 등 증가로 전년대비 47,043백만원(5.79%) 증가하였습니다.

8-2-2. 물 품

- ☐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85	6,904	38	368	8	60	715	7,212	
구 매	685	6,904	38	368	8	60	715	7,212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 ☞ 2012년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이며, 전년대비 308백만원(4.46%)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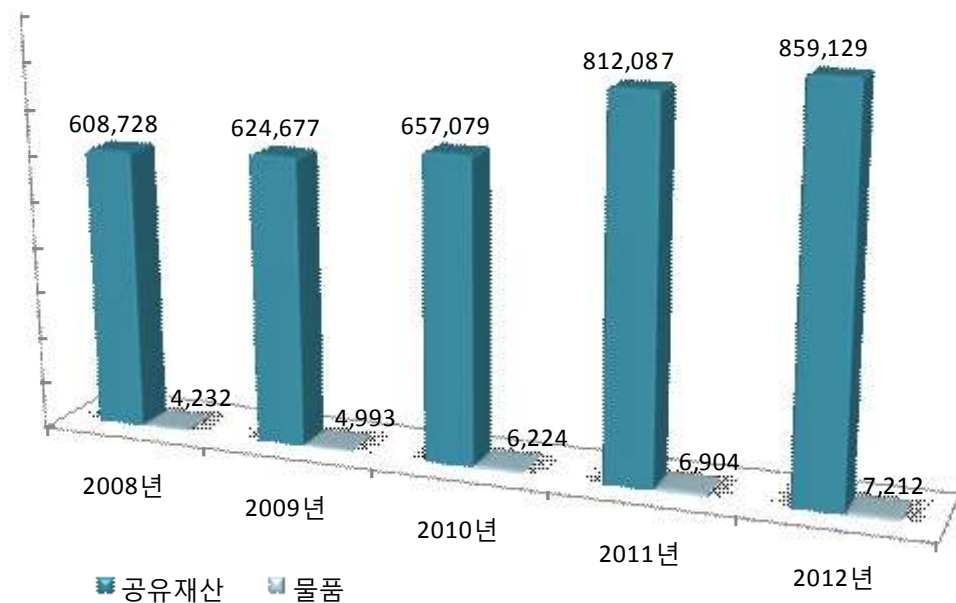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608,728	624,677	657,079	812,087	859,129
물 품	4,232	4,993	6,224	6,904	7,21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우리군 공유재산은 8,591억원으로 전년대비 470억원이 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공용재산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 393억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건물 처분으로 19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용재산은 농어촌도로 편입부지 매입 등으로 227억원 증가하였고, 이중입력자료 정비로 124억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은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 등의 매입으로 15억원이 증 되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2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암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429,135	7,251	1.69%	0	0%	
일 반 회 계	334,781	7,251	2.17%	0	0%	
특 별 회 계	39,595	0	0%	0	0%	
기 금	54,759	0	0%	0	0%	

-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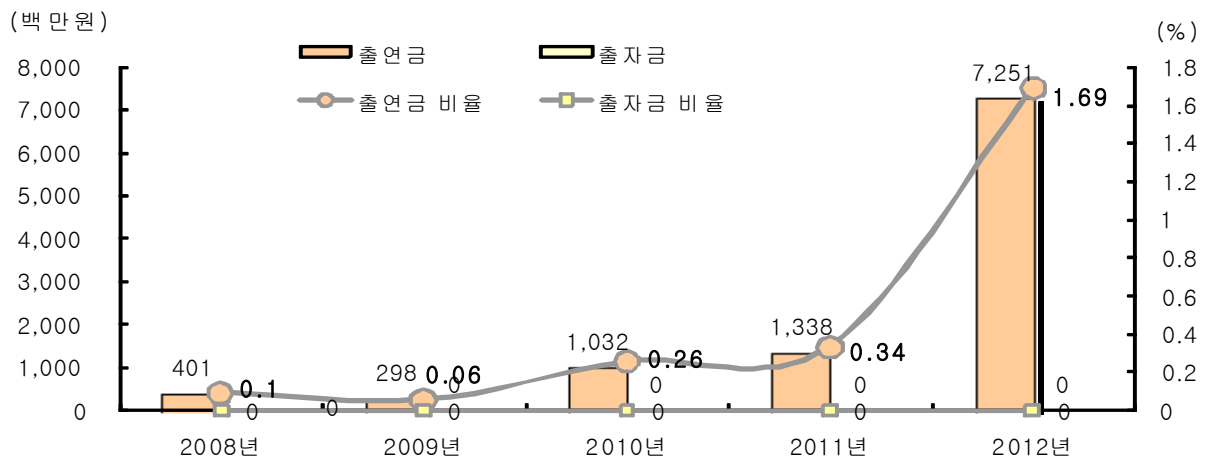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88,542	462,970	400,536	392,665	429,135
출연금(B)	401	298	1,032	1,338	7,251
비율(B/A)(%)	0.1%	0.06%	0.26%	0.34%	1.69%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C/A)(%)	0%	0%	0%	0%	0%

-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 연 · 출 자금 집 행 현 황



❖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천원)	기관단체명	근거(법조례등)	적 요
출 연 금	소 계	7,251,398	12기관		
	일반회계	210,928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 출연금
	일반회계	5,000	한국지역진흥재단	행안부 훈령 제129호	2012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131,600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특별 회계운영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	농어촌진흥기금 도 출연금
	일반회계	5,720,000	영암군민장학회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영암군민장학회 출연금
	일반회계	262,000	전라남도중소기업육 성기금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	2012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군비 출연금
	일반회계	500,000	(재)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2012년 전남 서남권 과학연구 단지 육성사업 군비 출연금
	일반회계	92,000	(재)전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84호"지역산업지원 사업 공통운영요령"	2012 전남 신소재조선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군비 출연금
	일반회계	2,57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308,000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종합자금 출연금
	일반회계	4,296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201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6,000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지역연고산업육성(신성장을 위한 녹색해양기자재산업 기반 활성화) 3차년도 출연금
	일반회계	9,000	(재)전남인재육성재 단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 출연금

▶ 회계별 출연·출자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4. 지방공기업 현황(신규)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공기업	40	108,183	2,065	10,308	12,178	△1,870	다 (2010)
	하수도공기업	26	127,504	2,270	4,012	9,210	△5,198	다 (2011)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2회계연도 결산)
-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2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영	상수도공기업	△810	△1,513	△3,616	△3,146	△1,870
	하수도공기업	△2,564	△3,141	△4,707	△5,311	△5,198

【 상수도 공기업 】

- 2012년 상수도 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감소하고 있으나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영업비용증가로 당기순이익 적자 발생

【 하수도 공기업 】

- 2012년 하수도 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감소하고 있으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사업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 적자 발생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421,820	2,329,637	92,183	1,724,434
부채 총계	22,928	17,800	5,128	31,596
비용 총계	277,604	245,630	31,974	229,138
수익 총계	338,859	319,822	19,037	321,825

-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별첨6 재무보고서 참고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영 암 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I. 건전성 (재정상태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5.34%	1.84%	4.63%	
	2. 경상수지비율↓	58.20%	68.78%	62.93%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4%	21.13%	7.11%	
	4. 지방채무상환비율↓	0.50%	3.06%	0.67%	
	5. 장래세대부담비율↓	0.73%	4.32%	1.66%	
	6. 자체세입비율↑	15.49%	29.28%	8.70%	
	6-1. 자체세입 증감률↑	29.22%	6.90%	2.44%	
II.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 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40	1.0063	1.003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27	-0.2491	-0.23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142	1.0916	1.032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418	-0.0589	-0.157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3	0.9970	0.9914
	세 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33	0.0094	0.0296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76	0.0849	0.141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17	0.1966	0.111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403	0.0631	-0.072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559	-0.0478	-0.0687	
III.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100%)		100.90%	104.21%	100.69%
	18. 예산집행률(100%)		79.57%	86.72%	79.19%
	19. 정책사업투자비율↑		51.34%	41.87%	60.3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100%)		58.00%	67.09%	69.09%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100%)		70.44%	65.87%	76.95%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text{세입}-\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text{지방채무 잔액}/\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text{부채총계}/\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times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 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 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text{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 징수결정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text{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 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행사·축제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민간이전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text{최종사업예산액} / \text{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text{세출결산액} / \text{예산현액}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출	$\text{투자지출액} / \text{정책사업비 결산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2-1. 총 평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영암군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자체 세입비율이 우수하고,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채납액 축소 노력도 등 동종단체 평균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예산집행률이 다소 미흡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축소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분야별 재정 특성 분석>

- 재정건전성 : 총액 인건비와 경상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상수익의 경상비용 충당능력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재정효율성 : 세외수입채납액 축소 노력도는 ‘세외수입채납 징수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등 채납액의 감소 노력을 통해 개선되었고, 인건비 지출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어 동종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의회경비 절감은 기준경비로 편성하여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국외여비 등 지출이 다소 높아 군의회와 공조하여 자구적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계획성 :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확보 노력이 필요함

9-2-2. 우수지표 원인 분석

<자체세입비율 : 15.49%>

-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의 법인세할 소득세 증가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 탈루세원 발굴로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 세입을 크게 증가 시킴으로써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함

<지방채무잔액지수 : 4.34%>

- 신규 지방채 차입 억제 및 매년 지방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잔액이 감소함
 - 2011년말 지방채무 잔액은 128억원으로 매우 건전하게 판단됨
 - 2010년 2,873백만원, 2011년 2,348백만원의 채무상환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 되면 2014년경에 채무상환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9-2-3.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의회경비 절감 : 0.037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범위 내에 집행은 하였으나, 국외여비 지출이 많았음. 중국 자매결연단체방문과 2011년 왕인문화 일본묘전제 참배와 관련 국외여비로 집행함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항목별 절감 목표 설정 등 자구적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70.44%>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사업계획 간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부족함. 이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투융자 심사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함

9-2-4. 개선사항

- 영암군의 재정건전성은 모든 분석지표에서 대체로 양호한 편임
- 아울러 왕인문화축제, 한옥박람회(격년제 시행) 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대한 투융자 사업의 재원확보 및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강화로 예산확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반영 실적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 － 중장기 계획의 수립 하에 투자의 우선순위 위주로 시설비·자산취득비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장기계속공사 등 이월사업이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함
 - － 대규모 공사의 경우 토지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협상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해야 함
- 정책사업투자비비율(51.34%)이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 사회복지보조비를 포함한 민간경상이전비 등 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정책사업 투자비 등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A)	7,495	7,246	7,209	8,062	8,075
비과세	5,590	5,069	5,422	5,572	5,349
감면	1,905	2,178	1,787	2,490	2,726
지방세 징수액(B)	42,384	50,103	40,726	54,466	55,982
비과세·감면율(A/A+B)	15.03%	12.64%	15.04%	12.89%	12.61%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구성비(%)	'11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8,075	100%	8,062	100%	13	0.16%
일반공공행정	2,530	31.33	2,493	30.92	37	1.48%
공공질서 및 안전	50	0.62	24	0.30	26	107.04%
교육	262	3.24	215	2.67	47	21.80%
문화 및 관광	115	1.43	120	1.49	△5	△4.02%
환경보호	0	0.00	0	0.00	0	2.72%
사회복지	436	5.39	425	5.28	10	2.39%
보건	29	0.35	28	0.35	1	2.04%
농림해양수산	563	6.97	610	7.57	△48	△7.80%
산업·중소기업	99	1.23	164	2.03	△65	△39.52%
수송 및 교통	5	0.07	7	0.08	△1	△16.34%
국토 및 지역개발	939	11.63	876	10.87	63	7.23%
과학기술	0	0.00	0	0.00	630	0.00%
국가	2,987	37.00	3031	37.59	△44	△1.4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9	0.74	69	0.85	△9	△13.60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075	5,349	2,417	12	297	
보 통 세	소 계	8,075	5,349	2,417	12	297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351	70	281	0	0	
	재산세	7,347	5,193	1,848	10	297	
	자동차세	376	86	287	3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 적 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4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11,704
여성정책추진사업	14	4,84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	6,828
기 타	3	31

-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군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9,712	624	3

-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http://www.yeongam.go.kr/재정공시/재정정보/군민참여예산방>)

9-6. 원가회계 정보

2012년 우리군 행사·축제 원가회계 공개 대상사업 입니다.(세부내역 별첨7)

(단위: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전통문화계승·보존·홍보	왕인문화 축제	'12.04.06~'12.04.09 (4일간)	전통문화계승, 지역문화행사	904,618	42,000	862,618
2	"	왕인국화 축제	'12.10.27~'12.11.18 (23일간)	국화전시회, 농특산물홍보	444,607	101,807	342,800
3	기타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	'12.10.27~'12.11.01 (6일간)	한옥우수성홍보, 한옥하우징마켓	549,293	200,000	349,293
4	주민화합과건강한지역사회	영암군민의 날	'12.10.29~'12.10.30 (2일간)	문예·체육 행사	228,824	-	228,824
5	기타	하미술관 전시회 개최	'12.09.03~'13.02.28 (6개월)	미술품 전기	66,302	-	66,302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영암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 '12 ~ '13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행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영암군이 법령 위반 및 과다지출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	감액 200백만원

-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영암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 료 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합 계(10개사업)	40,860	3,917	15,263	21,080			
영암뱅뱅이골 기찬랜드 조성	2,600	2,291	309	—	2013년	2012년	100%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	2,000	18	982	1,000	2014년	2012년	설계용역중 5%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3,000	—	3,000	—	2013년	2012년	설계용역중 20%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	13,300	328	2,129	10,843	2014년	2012년	40%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4,800	406	3,794	—	2013년	2012년	40%
시종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360	—	667	1,693	2014년	2012년	30%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확포장	2,900	700	800	1,400	2015년	2012년	20%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3,700	69	2,324	1,307	2015년	2012년	64.67%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2,200	—	500	1,700	2015년	2012년	7.2%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도로 확장	4,000	105	758	3,137	2014년	2012년	21%

- ▶ (대상사업)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회,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3.6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뱅뱅이골 기찬랜드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축산과 이진국 (☎470-2423)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월출산기찬랜드 관광객의 분산 효과 및 새로운 산림휴양시설 체험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 대처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

사업개요

○ 기간 : 2011년 ~ 2013년

○ 위치 :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2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산림욕장정비 5ha , 진입로개설 575.4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3백만원(국비200, 군비2,703)

○ 지금까지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2,903	—	—	2,703
2011년까지	1,391	200	—	1191
2012년	1,243	—	—	1243
2013년	269	—	—	269

추진상황(진도 : 100%)

○ 공사 착공 : 2011. 4월

○ 공사 준공 : 2013. 7월

향후계획

○ 뱅뱅이골 기찬랜드 소규모 정비 : 2013. 7월까지

사업변경 내역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비	군비	
당초	2,635	—	—	2,635	편의시설 정비,,보수등으로 증액
현재	2,903	200	—	2,703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철(☎470-2257)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육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4년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일원
- 시 공 사 : 미정
- 사업규모 : 파크골프장 18홀, 관리사 1동(부지 25,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600, 군비 1,400)
 - '13년 확보액 : 1,000백만원(국비 400, 군비 600)
- 지금까지 집행액 : 269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비 고
합 계	269	18	251		
국 비	-	-	-		
군 비	269	18	251		

- 향후 소요액 : 1,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비 고
합 계	1,731	-	731	1,000	
국 비	400	-	400	-	
군 비	1,331	-	331	1,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3.01. ~ 현재 :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13.05. ~ 현재 :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향후계획

- 2013.12. :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01. ~ 2014.12. :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시행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담당자	친환경농업과 박영미 (☎ 470-2381)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과실 및 시설채소 주산지인 영암북부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산지유통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
- 거점화된 전문APC로 통합하여 규모화 하고 브랜드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판매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관내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가격 보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3. 1월 ~ 2014. 3월
- 위치 : 신북면 월평리 102번지 외 2필지 ○ 시공사 : 미정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086㎡ 건축면적 3,723.5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67백만원(국비 950, 시도비 285, 시군구비 665, 자담 1,267)
- 지금까지 집행액 : 0 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167백만원

연도별	향후 소요액(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자담)	
2013	3,167	950	285	665	1,267	
2014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 진행중

□ 향후계획

- 입찰 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 : 2013. 9 ~ 10월
- 공사 착공 : 2013. 11월
- 공사 준공 : 2014. 3월 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자담)	
당초	3,000	900	270	630	1200	자부담증액
현재	3,167	950	285	665	1,267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임민우 (☎470-2363)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1년 ~ 2014년 ○ 위치 :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
- 단지면적 : 116,311㎡ ○ 단지유형 : 지역특화단지(식품산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700백만원(광특 2,436, 도비 176, 군비 6,061)
- 지금까지 집행액 : 671백만원(군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 특	도 비	군 비
계	671	—	7	664
2011년	48	—	7	41
2012년	280	—	—	280
2013년	343	—	—	343

- 향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 특	도 비	군 비
2014년	8,029	2,463	169	5,397

□ 추진상황(진도 : 40%)

- 개발계획 및 설계용역 시행 : 2012. 8 ~ 2013. 9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개최 : 2013. 5 ~ 2013. 6

□ 향후계획

-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확정, 편입용지 보상 실시 : 2013. 7 ~ 2013. 8
- 농공단지 승인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3.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분양완료 : 2013. 11 ~ 2014. 12 :

□ 사업변경 내역(면적축소 당초149,156㎡ → 변경 116,311㎡)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 업 비				비 고
		계	광특	도비	군비	
당초	149,156	13,307	3,159	226	9,922	조성
현재	116,311	8,700	2,463	176	6,061	면적축소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담당자	지역경제과 양은숙 (☎470-2352)	
-----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근로자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마련으로 복지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형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0년 ~ 2013년

○ 위치 :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26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2,000㎡, 연면적 2,500㎡(지하 1층 지상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200백만원(분권 2,100, 도비 500, 군비 1,600)

○ 지금까지 집행액 : 666백만원(분권 200, 군비 46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분 권	도 비	군 비
계	666	200	—	466
2010년	106	—	—	106
2011년	300	161	—	139
2013년	260	39	—	221

○ 향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 특	도 비	군 비
2013년	8,034	1,900	5,000	1,134

□ 추진상황(진도 : 40%)

○ 공사 착공 : 2012. 11월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3. 12월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 업 비				비 고
	계	광특	도비	군비	
당초	4,800	2,100	1,000	1,700	사업규모 축소
현재	4,200	2,100	500	1,600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시종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이복덕 (☎470-2351)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소비자 중심의 기반·편익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사업개요

○ 기간 : 2013년 ~ 2014년

○ 위치 :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93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장옥정비 3동 65칸(3m×4m) 780㎡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67백만원(광특 1,300, 군비 867)

○ 지금까지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분 권	도 비	군 비
계	-	-	-	-
2013년	-	-	-	-

향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 특	도 비	군 비
2013년	2,167	1,300	-	867

추진상황(진도 : 30%)

○ 사전 준비절차 이행 : 2008. 8월 ~ 2013. 4월

○ 20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 2013. 2월

※ 도 광특사업예산 반영, 중앙부처 예산 최종 심의 절차 진행중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 2013. 9월 ~ 2013. 11월

○ 설계용역 : 2013. 11월까지

○ 공사 착 공 : 2013. 12월

○ 공사 준공 : 2014. 12월까지

사업변경 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	사 업 비				비 고
	계	광특	도비	군비	
당초	2,360	1,420	-	940	부지매입 비 축소
현재	2,167	1,300	-	867	

■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방재과 이명돈 (☎470-2499)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삼호 산호마을에서 정개마을 인근 3여개 마을 347명 주민들이 농로 및 마을진입로를 경유하여 이용하고 있어 주민불편 초래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농산물 수송 원활 등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차량 및 농기계이동 편의제공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2015년 ○ 위 치 : 삼호읍 산호리 일원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1.0km, B=8.0m ※ 편입용지보상 협의중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군비) ○ 지금까지 집행액 : 1,500백만원(2013년까지) ○ 향후 소요액 : 1,400백만원(2015년까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편입용지 보상 : 89필지 17,893㎡ - 협의완료 : 38필지 9,947㎡ ※ 용지보상 협의 완료 후 사업비확보 공사추진 □ 향후계획 ○ 2014. 1 ~ 2015. 12 : 공사시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영암군 청사 리모델링	담당자	재무과 박희천 (☎470-2279)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노후된 청사를 정비하여 공공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구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 ~ 2015년
- 위치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사업규모 : 군 청사 정비사업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00백만원(군비2,635)
- 지금까지 집행액 : 2,37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2,393	970	—	1,423
2012년	69	—	—	69
2013년	2,324	970	—	1,354

- 향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2014년이후	1,307	336	—	971

추진상황(진도 : 64.27%)

- 공사 착공 : 2012. 4월
- 공사 준공 : 2013. 8월 1차 준공, 2015년 12월 2차 준공

향후계획

- 군청사 정비사업 시행 : 2015. 12월까지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영석 (☎470-2447)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통일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기에 굴착공사 시 각종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굴착사고 미연에 예방
- 정확한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굴착공사에서 굴착사고로 인한 각종 군민 불편사항(단전, 단수, 통신 두절)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 사업개요

- 기간 : 2013년 ~ 2015년
- 위치 : 영암읍 도시지역 일원(면적3.75km²)
- 사업규모 : 304km(도로 84km, 상수 90km, 하수 13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00백만원(국비 1,140, 군비 760)
- 지금까지 집행액 : 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250	150	—	100
2013년	250	150	—	100

- 향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1,650	990	—	660
2013년	250	150	—	100
2014년	700	420	—	280
2015년	700	420	—	280

□ 추진상황(진도 : 7.2%)

- 공사 착공 : 2013. 05월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5. 12월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군비	
당초	304km (도로 84, 상수 90, 하수 130)	2,200	1,320	—	880	도계약심사로
현재	304km (도로 84, 상수 90, 하수 130)	1,900	1,140	—	760	사업비 축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도로확장	담당자	도시개발과 임경한(☎470-2198)
-----	-----------------	-----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종합행정복지타운진입도로는 버스터미널과 인접되고 월출산국립공원 진입도로이며 많은 주민들이 농기계 및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차로폭이 협소하여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도로확장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4년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용흥리 일원
- 시 공 사 : 미정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1,056m, B=8m확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특교 700, 군비 3,300)
 - '13년 확보액 : 50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928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이후	비 고
합 계	986	229	757		
특교	688	229	459		
군 비	298	-	298		

- 향후 소요액 : 3,072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비 고
합 계	3,014	-	-	3,014	
국 비	-	-	-	-	
군 비	3,014	-	-	3,014	

□ 추진상황

- 2011.08. ~ 2012.02. :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추진
- 2012.10. ~ 2012.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 향후계획

- 2013.12. : 편입토지매입완료
- 2014.01. ~ 2014.12. :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도로확장 시행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영암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 작성기준 : 2013. 6월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해당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 영암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3년은 예산 반영액, 2014년 이후는 추정액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 해당없음

지방재정 특별공시 대상(선정) 목록

- 1 제7호 달뜨는집 건립
- 2 소하천 시설보수 사업
- 3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 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5 영암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 6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7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제7호 달뜨는집 건립

사 업 개 요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38-9
- 사업규모 : 연면적 192.36㎡, 4가구/ 조적조 판넬지붕
- 사업기간 : 2012. 6. 27 ~ 2013. 6. 15
- 총사업비 : 160백만원(군비)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붕괴 위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의 재해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주거공간 마련

□ 사업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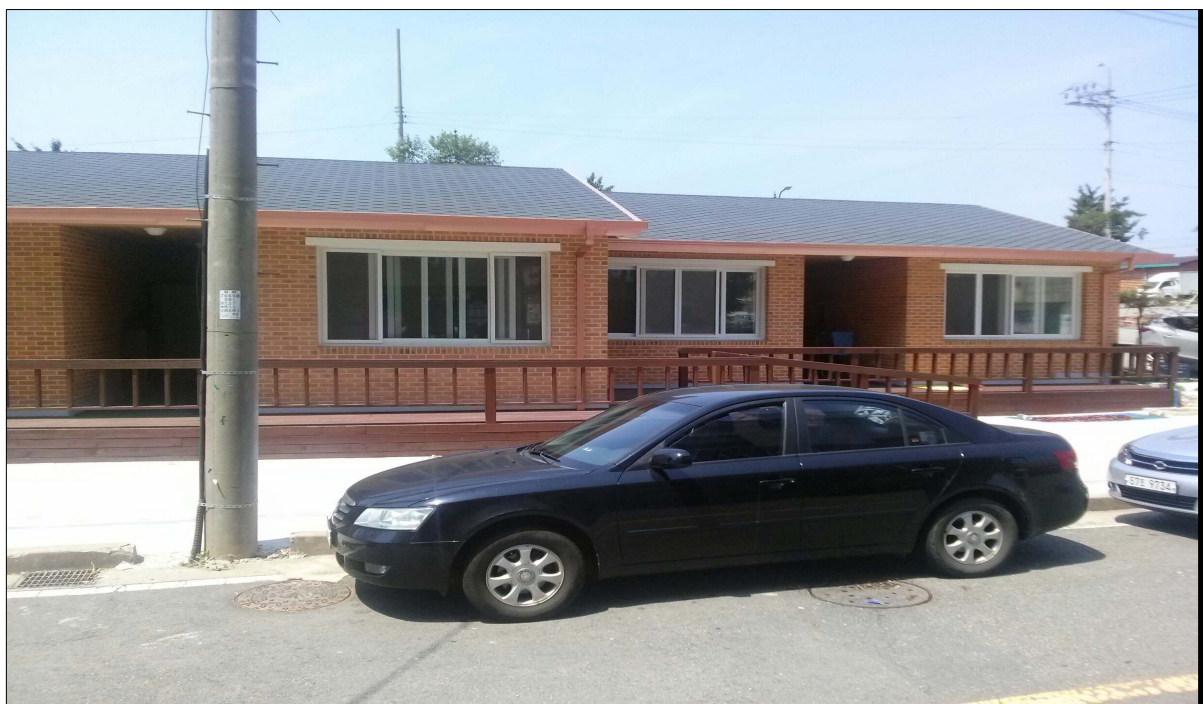
- '12. 5. : 사업대상지(위치) 선정
- '12. 6. : 실시 설계완료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2. 11. : 농어촌공사 토지 교환 완료
- '12. 6 ~ 13. 6 : 사업추진 및 완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건설방재과	이상용	470-2419

□ 조 감 도 (위치도)



□ 전 경 사 진



소하천 시설보수사업

사 업 개 요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신북·도포면 일원
- 사업규모 : 4개지구
- 사업기간 : 2012. 03. ~ 2012. 10.
- 총사업비 : 5,004백만원(국비 2,502, 군비 2,502)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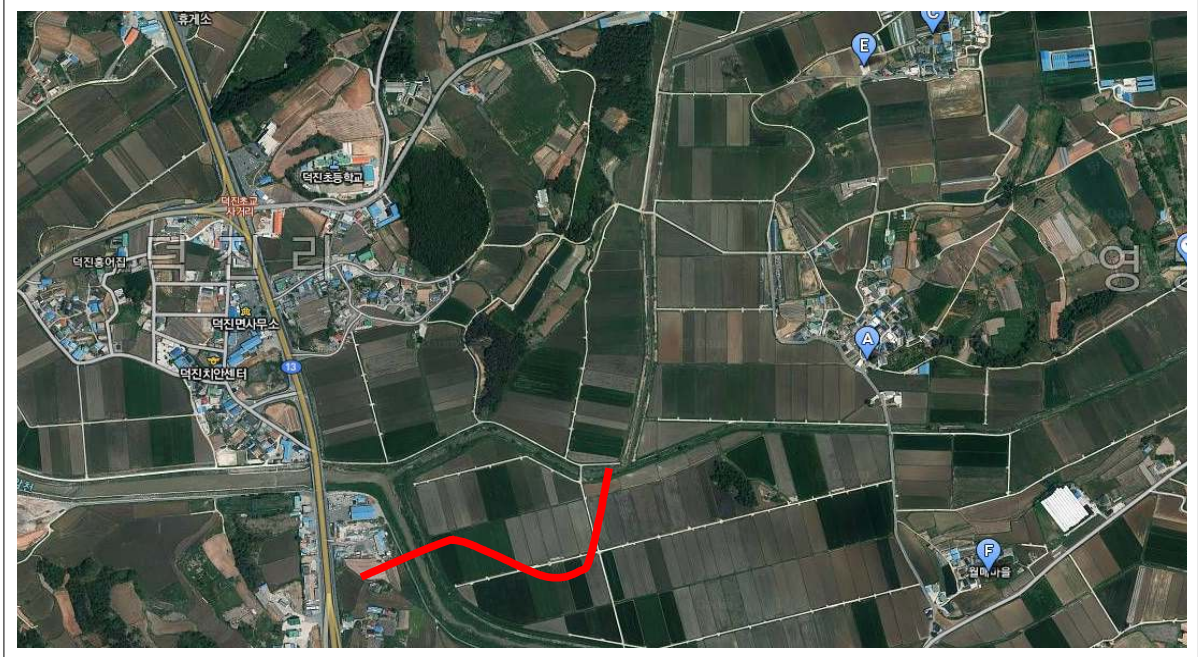
- 지방하천계수의 분류 및 주요지천, 하천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
-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영농 생활을 위하여
기 수립한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로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사전 재해예방

□ 사업진행 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2. 28.
-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 2012. 3. 07.
- 착공 : 2012. 04. 06.
- 준공 : 2012. 10. 16.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건설방재과	이우기	470-2619

□ 조 감 도 (위치도)



□ 전 경 사 진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영암읍 회문리 일원
- 사업규모 : 28,636㎡(기념관 4,257, 생가터 586, 기타 23,793)
- 사업기간 : 2007 ~ 2013
- 총사업비 : 19,000백만원(광특 9,292 군비 9,708)
- 사업내용 : 기념관, 사당, 생가터 및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가야금 산조를 창시하여 한국 음악사를 빛낸 악성 김창조 선생을 비롯한 3인의 위업을 선양
- 전통문화의 보전 및 주변 유원지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들의 방문 기회의 폭을 확대하여 전통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관광자원 확보

□ 사업진행 현황

- '05. 1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09. 03. 12 : 군 관리계획변경결정(문화시설)
- '08. 04. 16 ~ '10. 07. 16 : 기초기반시설 조성공사
 - 공사비 : 3,220백만원(진입로, 야외공연장, 화장실, 가야금동산 등)
- '09. 12. 30 ~ '12. 10. 01 : 가야금테마전시관 조성공사
 - 공사비 : 7,045백만원(기념관, 사당, 생가터부지, 주차장 등)
- '09. 12. 30 ~ '13. 11. 30 : 전시시설 설치공사
 - 공사비 : 3,600백만원(전시실, 수장고, 실내공연장, 분장실, 조형물 등)
- 가야금 산조 6대 유파별 전시 기증물품 수집
 - ※ 기증상황 : 6개류파(가야금등 45점) 완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실	조정민	470-2076

□ 조 감 도 (위치도)



□ 전 경 사 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위 치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84-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5,193백만원
- 사업량 : 22,250m² (건축면적 : 2,104m²)
 -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 조경 등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환경오염으로 인한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 고조
- 국민의 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가로 산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 급증
- 월출산,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등 우리군의 전통적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목재를 테마로 한 체험 위주의 관광자원 육성 필요
- 주변이 한옥마을 조성지로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 가구, 공예품 등 숲과 나무의 중요성 홍보의 최적 장소

□ 사업진행 현황

- '10. 12. 28 ~ '11. 05. 24 : 실시설계 완료
- '11. 06. 27 : 도 계약심사 및 군 일상감사 완료
- '11. 07. 25 : 군 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
- '11. 08. 01 : 공사 계약 의뢰
- '11. 08. 09 : 건축 협의(허가)
- '11. 09. 21 : 사업자선정 및 공사착공
- '13. 03. 18 :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 등 공사 완료
- '13. 06. 21 ~ 09. 28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 추진
- '13. 07. 17 ~ 07. 31 : 전시관 명칭 공모(군 산하직원 대상)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산림축산과	강준호	470-2422

□ 조 감 도 (위치도)



□ 전 경 사 진



영암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사 업 개 요

- 위 치 : 영암읍 역리 공설운동장 지내
- 사업규모 : 실내수영장, 궁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 사업기간 : 2008년 ~ 2014년
- 총사업비 : 277억원(국비 73, 군비 204)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 사업진행 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0. 12.
- 사업착공 : 2011. 01.
- 사업완료 : 2014. 12.
 - 2013. 12. : 실외체육시설(궁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준공
 - 2014. 12. : 실내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준공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철	470-2257

□ 위치도



□ 조감도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개요

- 위치 : 영암읍 용흥리 영암천, 도포면 성산리 도포천
- 사업규모 : L = 5.3km(영암천 3.2, 도포천 2.1)
- 사업기간 : 2011. 5. 24 ~ 2014. 12. 31
- 총사업비 : 9,900백만원(국비 6,930, 군비 2,97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영암천 및 도포천에서 발생하는 점·비점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자연 생태계 훼손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 수질개선 및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수변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 사업진행 현황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군) : '08. 09. 19
- 재해영향성검토(건설방재과-19869) : '09. 11. 1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완료(도) : '10. 04.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환경부) : '10. 12. 30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환경부) : '11. 01. 20
- 총괄 및 1차분 공사계약, 착공 : '11. 05. 24
- 1차분 공사 준공(영암천 L=1.3km) : '11. 12. 26
- 2차분 공사 준공(영암천 L=1.7km) : '12.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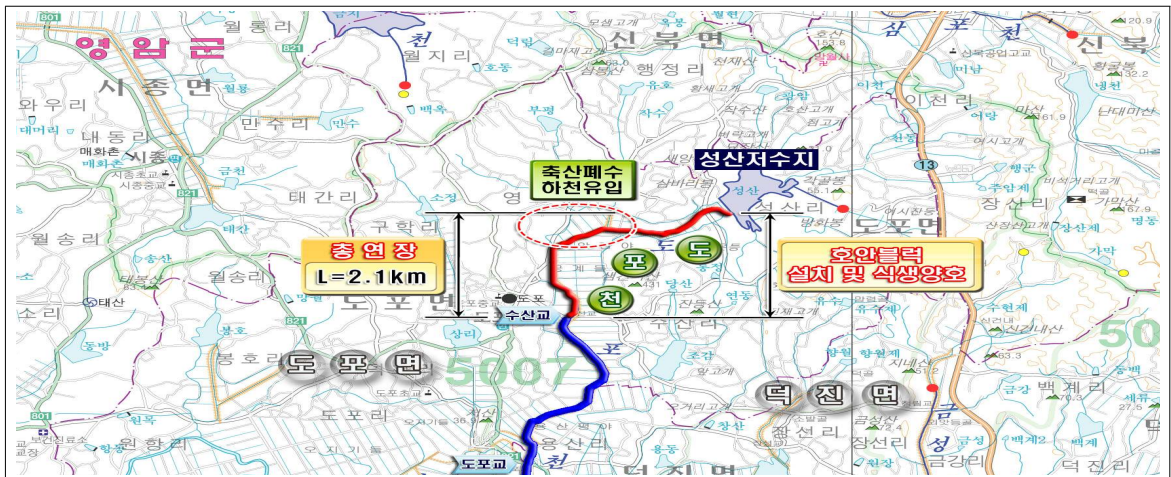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보전과	류미아	470-2337

□ 조감도 또는 위치도

■ 영암천



■ 도포천



□ 전 경 사 진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사 업 개 요

- 위 치 :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 ~ 학산면 금계리 일원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2.0km, B=9.5m
- 사 업 비 : 2,984백만원(국 2,206.,군 778)
- 사업기간 : 2011. 10 ~ 2013. 1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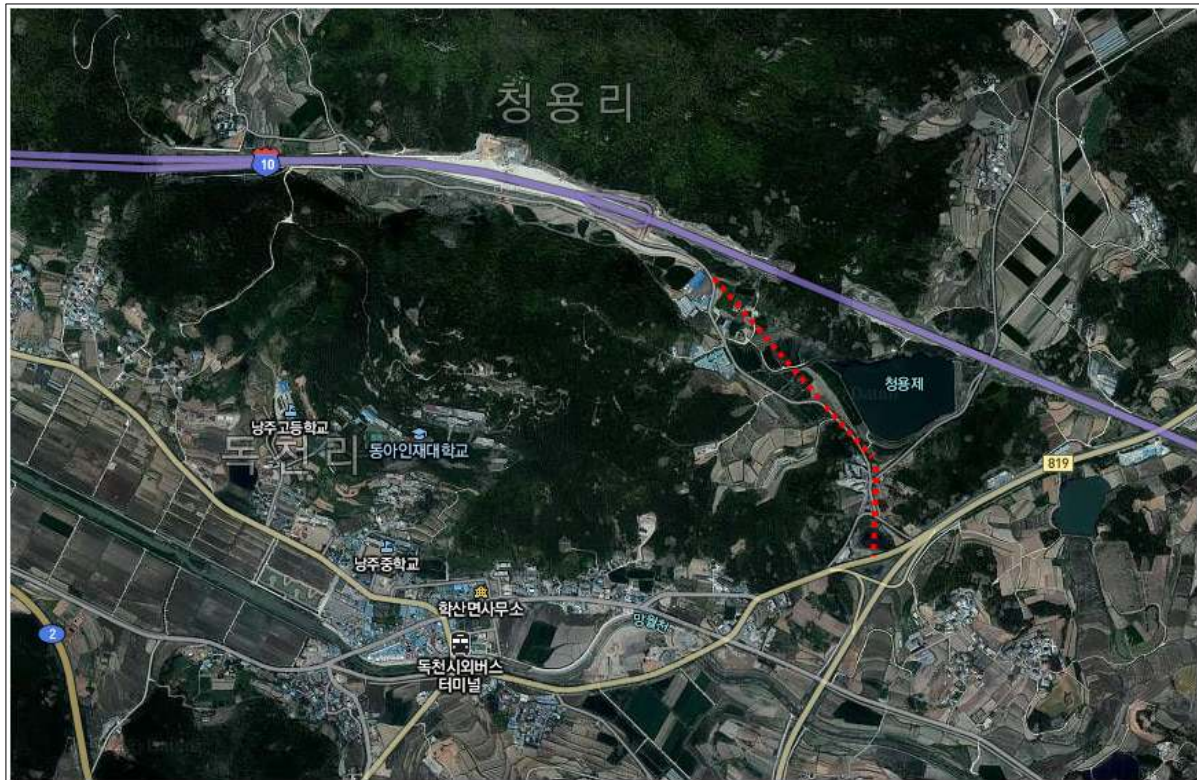
-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고속국도의 진출입 확보를 통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진행 현황

- 기본설계 및 사전재해, 사전환경성 협의 완료 : 2010년
- 실시설계 및 농지, 산지 전용 완료 : 2011. 6
- 문화재 지표조사, 지적공부 정리 및 협의보상 통보 : 2011. 7
-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완료 : 2011. 1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수용(지토위) : 2013. 4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1. 11 ~ 2013. 10.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건설방재과	손철진	470-2487

□ 조 감 도 (위치도)



□ 전 경 사 진



－ 부 록 －

- [별첨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2년 12.31기준)
- [별첨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2012년 기준)
- [별첨3]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년)
- [별첨4]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2012년)
- [별첨5] 민간행사보조 집행현황(2012년)
- [별첨6] 기금회계 집행현황(2012년)
- [별첨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별첨8]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 [별첨9]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별책)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2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0,948,272	북구	312,937	대전광역시	1,524,583
서울특별시	10,195,318	해운대구	428,188	동구	251,945
종로구	165,207	사하구	352,726	중구	264,125
중구	133,360	금정구	255,692	서구	496,513
용산구	243,232	강서구	65,806	유성구	306,312
성동구	299,604	연제구	211,536	대덕구	205,688
광진구	371,313	수영구	176,666	울산광역시	1,147,256
동대문구	363,258	사상구	250,424	중구	233,013
중랑구	419,295	기장군	114,566	남구	346,836
성북구	481,857	대구광역시	2,505,644	동구	175,479
강북구	343,157	중구	75,439	북구	184,088
도봉구	362,270	동구	342,092	울주군	207,840
노원구	597,189	서구	220,211	세종특별자치시	113,117
은평구	501,480	남구	168,715	경기도	12,093,299
서대문구	315,113	북구	448,485	수원시	1,120,258
마포구	384,644	수성구	459,779	성남시	978,615
양천구	495,911	달서구	606,557	의정부시	429,147
강서구	567,431	달성군	184,366	안양시	611,412
구로구	427,520	인천광역시	2,843,981	부천시	869,944
금천구	243,288	중구	98,648	광명시	355,560
영등포구	391,408	동구	76,720	평택시	434,305
동작구	405,491	남구	414,500	동두천시	97,175
관악구	523,029	연수구	292,589	안산시	715,108
서초구	435,044	남동구	503,597	고양시	969,916
강남구	564,197	부평구	559,047	과천시	71,068
송파구	673,115	계양구	342,202	구리시	192,341
강동구	487,905	서구	469,887	남양주시	599,539
부산광역시	3,538,484	강화군	66,752	오산시	200,291
중구	48,148	옹진군	20,039	시흥시	399,485
서구	120,828	광주광역시	1,469,216	군포시	286,841
동구	98,529	동구	105,580	의왕시	154,757
영도구	139,765	서구	316,545	하남시	146,269
부산진구	392,731	남구	218,313	용인시	915,959
동래구	278,767	북구	443,677	파주시	394,201
남구	291,175	광산구	385,101	이천시	204,917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1,608	영동군	50,663	부안군	58,869
김포시	287,432	진천군	63,458	전라남도	1,909,618
화성시	525,490	괴산군	37,713	목포시	245,073
광주시	275,656	음성군	92,980	여주시	292,217
양주시	200,310	단양군	31,253	순천시	273,798
포천시	157,559	증평군	34,279	나주시	88,067
여주군	109,550	충청남도	2,028,777	광양시	150,837
연천군	45,599	천안시	581,988	담양군	47,612
가평군	60,794	공주시	117,298	곡성군	30,878
양평군	102,193	보령시	105,559	구례군	27,077
강원도	1,538,630	아산시	280,490	고흥군	71,560
춘천시	273,364	서산시	163,315	보성군	47,050
원주시	323,885	논산시	126,653	화순군	68,378
강릉시	217,741	계룡시	41,550	장흥군	42,672
동해시	93,897	당진시	155,104	강진군	40,241
태백시	49,493	금산군	55,715	해남군	78,150
속초시	83,579	부여군	73,259	영암군	59,997
삼척시	72,463	서천군	58,920	무안군	75,741
홍천군	69,727	청양군	32,087	함평군	35,780
횡성군	44,615	홍성군	88,415	영광군	57,224
영월군	40,155	예산군	85,876	장성군	46,289
평창군	43,627	태안군	62,548	완도군	53,871
정선군	39,915	전라북도	1,873,341	진도군	33,208
철원군	47,968	전주시	648,863	신안군	43,898
화천군	25,020	군산시	278,341	경상북도	2,698,353
양구군	22,799	익산시	306,469	포항시	518,913
인제군	32,456	정읍시	119,392	경주시	264,091
고성군	30,124	남원시	87,000	김천시	135,504
양양군	27,802	김제시	92,317	안동시	168,302
충청북도	1,565,628	완주군	86,164	구미시	416,949
청주시	666,852	진안군	26,963	영주시	113,547
충주시	208,447	무주군	25,321	영천시	101,798
제천시	137,521	장수군	23,191	상주시	104,182
청원군	154,780	임실군	29,956	문경시	75,899
보은군	34,438	순창군	30,055	경산시	246,358
옥천군	53,244	고창군	60,440	군위군	24,119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의성군	57,043	울릉군	10,673	함안군	67,425
청송군	26,481	경상남도	3,319,314	창녕군	62,966
영양군	18,208	창원시	1,091,471	고성군	56,906
영덕군	40,257	진주시	337,314	남해군	48,223
청도군	43,968	통영시	139,347	하동군	50,806
고령군	35,343	사천시	115,321	산청군	35,691
성주군	45,127	김해시	513,260	함양군	40,714
칠곡군	119,786	밀양시	108,755	거창군	63,103
예천군	46,027	거제시	236,944	합천군	50,279
봉화군	33,934	양산시	270,460	제주특별자치도	583,713
울진군	51,844	의령군	30,329		

※ 본 인구통계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2.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2012년 기준)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 국	3,731	동래구	12	동구	8
서울특별시	533	남구	15	서구	13
본청	114	북구	13	남구	12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구	20
중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5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9
성동구	14	강서구	7	본청	26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구	12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7	유성구	10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50	대덕구	9
도봉구	14	본청	34	울산광역시	76
노원구	22	중구	7	본청	26
은평구	18	동구	16	중구	11
서대문구	15	서구	12	남구	14
마포구	18	남구	9	동구	8
양천구	18	북구	20	북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48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0	본청	131
동작구	17	본청	38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구	17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9	부천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4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35	부평구	19	평택시	15
본청	53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구	7	서구	14	안산시	21
서구	9	강화군	7	고양시	30
동구	9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4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청	26	남양주시	14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군산시	24
시흥시	12	양양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충청북도	165	정읍시	17
의왕시	7	본청	35	남원시	16
하남시	7	청주시	26	김제시	14
용인시	25	충주시	19	완주군	10
파주시	11	제천시	13	진안군	7
이천시	9	청원군	11	무주군	7
안성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김포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화성시	17	영동군	8	순창군	8
광주시	8	진천군	7	고창군	10
양주시	7	괴산군	8	부안군	10
포천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5
여주군	7	단양군	7	본청	62
연천군	7	증평군	7	목포시	22
가평군	7	충청남도	209	여주시	26
양평군	7	본청	42	순천시	24
강원도	216	천안시	21	나주시	14
본청	47	공주시	11	광양시	12
춘천시	21	보령시	12	담양군	9
원주시	22	아산시	14	곡성군	7
강릉시	18	서산시	13	구례군	7
동해시	8	논산시	12	고흥군	12
태백시	7	계룡시	7	보성군	9
속초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삼척시	8	금산군	8	장흥군	7
홍천군	8	부여군	11	강진군	8
횡성군	7	서천군	9	해남군	11
영월군	7	청양군	8	영암군	9
평창군	7	홍성군	10	무안군	7
정선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철원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화천군	7	전라북도	240	장성군	8
양구군	7	본청	43	완도군	9
인제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신안군	10	영양군	7	김해시	21
경상북도	347	영덕군	7	밀양시	12
본청	63	청도군	7	거제시	15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5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0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0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9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0
상주시	17	경상남도	318	산청군	9
문경시	10	본청	59	함양군	9
경산시	15	창원시	55	거창군	10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0
의성군	13	통영시	12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3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765건	228,459	
소 계	34건	10,577	
1월	재정운영 시책추진 협조자 간담회 식비 지급외 5건	1,706	
	YGK 청년희망 국토대장정 영암방문에 따른 격려품 구입외 10건	4,924	
	농공단지 투자유치 기업체 관계자와 식사	200	
	영암군 관리계획결정 용역추진 관계자와 식사외 3건	723	
	의정활동 노고의원 격려품 구입외 11건	3,024	
소 계	59건	18,167	
2월	군 재정운영 협조자 홍보용 특산물 구입외 8건	2,861	
	2012년 군정주요 시책협의를 위한 실과소장과 만찬외 17건	4,882	
	일본 사가현 우호방문단 왕인박사유적지 시찰에 따른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1,500	
	재원확충 시책추진협조 중앙부처관계자 홍보용 농특산물구입외 30건	8,924	
소 계	52건	14,397	
3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홍보단 우리군 방문에 따른 군 홍보 특산물 구입외 33건	8,577	
	회계및지출업무추진 관계자와 식사외 14건	4,390	
	목포상공회의소 임원선출에 따른 축하화분 구입외 4건	1,43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52건	12,823	
4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TF팀 보고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와 오찬외 12건	2,855	
	암예방 교육실시에 따른 참여강사 우리군 홍보 농특산물 구입외 17건	4,109	
	왕인문화축제 한일우정공연 타악퍼포먼스 공연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외 4건	1,410	
	돌풍으로 인한 대불산단 피해시설 방문에 따른 관계자 오찬외 10건	3,245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한옥관련 R&D사업 워크숍 개최에 따른 관계자 농특산물 구입외 4건	1,204	
소 계	54건	12,555	
5월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현장실사 민간평가위원 및 공무원 등 관계자와 오찬외 9건	2,336	
	영암군 관내 중고등학교 성상담 성교육전문강사 우리군 방문에 따른 군홍보 농특산물 구입 증정외 12건	3,920	
	전남농협지역본부직원 농촌일손돕기 참여 오찬외 9건	2,901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따른 관계자와 조찬외 8건	990	
	삼군봉 업무추진을 위한 강진, 장흥 관계자와 만찬외 11건	2,408	
소 계	48건	14,255	
6월	2013년 보통교부세 산정 협조자 간담회 식비 지급외 16건	3,903	
	2012 광제조업 통계조사에 따른 관계자와 식사외 11건	1,708	
	영암·창원국가산업단지 상생협력 협약식 기념품 구입	1,950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 방문에 따른 관계자 조찬외 17건	6,694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43건	12,256	
7월	기찬랜드 개장 축하공연에 따른 참가가수 및 아나운서 등 출연진 군홍보 농특산물 구입외 12건	4,476	
	2012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지역특산물 구입외 21건	6,489	
	후반기 의장단 식사 접대외 3건	677	
	환경부 실시 전국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 전국 최우수선정에 따른 관계자 격려외 3건	614	
소 계	46건	14,891	
8월	세계 식생 과학대회 생태 답사단 관내 문화유적 탐방에 따른 우리군 홍보용 특산품 구입외 6건	1,528	
	전남도-중국 장시성 청소년 교류 체험중 문화유적지 탐방에 따른 방문기념 특산품 구입 증정외 17건	5,870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초청 특별강연회 참석 전남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 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955	
	태풍(카눈) 비상근무관계자와 식사외 19건	5,538	
소 계	82건	29,270	
9월	기찬랜드 및 뽕뽕이골 취재차 방문 언론 관계자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외 12건	2,447	
	제178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 개최에 따른 군홍보 농특산물 구입	1,963	
	영암군립 하미술관 개관 기념 오찬	1,745	
	자매결연도시 영등포구 재해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참여자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088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1,000	
	태풍"볼라벤"관련 유관기관 일손돕기 참여자와 식사외 64건	21,027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66건	19,269	
10월	군 재정운영 협조자 간담회 식비 지급외 30건	10,596	
	영암의 날 생활체육 야구행사에 따른 군홍보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외 25건	5,946	
	태풍 불라벤 피해복구 현장 방문 중앙부처 관계자 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260	
	자연보호행사 및 환경정화활동 후 직원 격려 오찬외 7건	1,467	
소 계	83건	23,262	
11월	가을철 주요관광시설 점검에 따른 관계부서와 식사외 24건	6,676	
	중앙부처 관계자 우리군 방문에 따른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외 32건	9,740	
	통계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시군담당자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040	
	농업분야 재해피해 정밀조사에 따른 관계부서와 식사외 5건	1,872	
	군민의날 행사장 마무리 청소후 직원 격려 식사비외 17건	3,934	
소 계	144건	52,708	
12월	정부합동평가 업무추진 관계부서 직원과 식사외 35건	13,237	
	제1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보고회 개최에 따른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증정	1,000	
	태풍피해(블라벤, 텐빈) 현장방문 중앙부처 관계자와 식사외 29건	9,663	
	영암군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 관계직원 격려 식사외 16건	7,258	
	2012년 시책추진 성과소, 읍면장 노고 격려 만찬	1,280	
	군정협조 방송국 관계자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증정	1,575	
	군정협조 관계자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증정	2,145	
	2012년 가을철 영농기 농촌일손돕기(시종, 군서)참여직원 격려 식사비지급외 55건	14,825	
	군정협조 신문사 관계자 군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급	1,725	

별첨 4 '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344건	5,308,419	
소 계	5건	63,450	
1월	우수 농특산물관촉행사 지원	1,570	
	2012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1월분)	7,360	
	2012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1월분)	3,680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급	50,000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 지급	840	
소 계	24건	248,839	
2월	영암향교 2012년 경서학원 보조금 지급	12,000	
	영암향교 2012년 춘기 석전대제 보조금 지급	3,000	
	영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보조금 지급	100,000	
	2012년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5,0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 지급(1월분)	1,080	
	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포장재 제작지원	4,621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 지급(2월분)	1,080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1차)	8,067	
	영암군 자율방재단 정기교육에 따른 보조금	6,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월	1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 4대보험료	835	
	1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 지급	4,191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급(1, 2월)	700	
	2012년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40,000	
	2012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2월분)	5,520	
	2012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2월분)	7,360	
	스포츠바우처사업 보조 (1월분)	1,650	
	2012년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운영비 보조금 지급	5,000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11,400	
	4-H회 육성지원 보조금 지급	1,600	
	생활개선회 발작물 우량종자 지원	2,000	
	영암군농특산물홍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급	1,500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운영비 지원	5,000	
	왕인박사 홍보용 <성기동> 책자 발간 보조금 지급	9,595	
	왕인전통종이공예관 운영비 지급	11,640	
소 계	23건	253,801	
3월	기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활동 지원사업 보조금(1차)	20,000	
	2012년 목포지역 범죄예방 피해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	5,000	
	아천미술관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20,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3월	영산미술관 운영지원 보조금 지급	20,000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전통연희체험 콘서트)	6,300	
	춘기전통제례 문화보급지원 보조금	9,100	
	영암민속예술단 교육운영지원 보조금	12,000	
	1,2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	9,000	
	1,2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	10,600	
	1,2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	15,200	
	전남쌀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1차)	2,603	
	1,2월분 귀농정착금 지원(4차)	4,8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3월분)	1,080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2차)	7,468	
	2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778	
	2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 지급	4,212	
	2012년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60,000	
	영암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700	
	2012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3월분)	5,520	
	2012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3월분)	7,360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 보조(2월)	1,920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5,000	

(단위 : 천 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5,160	
소 계	27건	1,080,272	
4월	왕인학당 운영 지원사업 지원	10,000	
	영암서가협회 서예교육지원 보조금	6,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55,939	
	전통문화계승보전지역 보조금 지급	12,000	
	달마지쌀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1차)	180,000	
	전남쌀평생고객확보택배지원(2차)	2,796	
	201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1~7월분)	686,654	
	3월 귀농정착금 지원(1차)	9,800	
	3월 귀농정착금 지원(2차)	3,400	
	3월 귀농정착금 지원(3차)	1,60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지원(1차)	9,728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3차)	8,294	
	영암군 근로자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급	9,000	
	마을기업 육성사업 컨설팅 보조금 지급	5,000	
	3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 지급	4,212	
	3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778	
	2012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4월)	5,52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4월	201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4월분)	7,360	
	스포츠지원사업 지원 보조(3월)	2,240	
	2012년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4,000	
	2012년 왕인문화축제 축산물 무료시식 및 판촉홍보비 지원	2,000	
	1/4분기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	7,500	
	2012년도 1/4분기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조금 지급	34,551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1,900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2,000	
	농촌노인생활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6,000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2,000	
소 계	33건	352,828	
5월	기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활동 지원사업 보조금(2차)	30,000	
	법질서 바로세우기 사회교육 활동 보조금 지급	5,000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 녹색생활운동 피복비 지원	2,910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22,000	
	3월 귀농정착금 지원(4차)	4,6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4월분)	1,080	
	4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	10,400	
	4월 귀농정착금 지원(2차)	7,8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4월 귀농정착금 지원(3차)	4,200	
	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포장재 지원	14,025	
	5월 귀농정착금 지원(1차)	9,4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5월분)	1,080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35,000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4차)	8,126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1차)	1,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67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보조금 지급	4,236	
	2012년 3/4분기 영암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800	
	2012년 3/4분기 영암지역 자활센터 운비비 지급	40,000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7,294	
	생활체육교실 운영	13,095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5월분)	7,360	
	2012년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5월분)	5,520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 보조(4월)	2,520	
	푸른영암21협의회 보조금 지원	14,550	
	돼지씨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1차 (이영희)	6,960	
	돼지씨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2차(팜스텍)	9,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43건	513,277	
6월	돼지췌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3차(신북3,도포2)	26,700	
	돼지췌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4(도포2)	7,620	
	돼지췌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5(학산2)	7,380	
	돼지췌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6(박송우,미암4)	24,060	
	돼지췌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7(김영초)	1,620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 보조금 집행	5,820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포순이 봉사단 복장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910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비 지급	5,330	
	문화학교 운영비 지급	20,000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및 아동안전지도제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	8,626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1,949	
	5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	7,400	
	5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	5,60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	4,925	
	전남쌀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1,430	
	2011년 농업인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2차)	54,261	
	6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	10,000	
	20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보육시설 40%) 지원사업 (1~5월분)	60,249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6월	6월분 귀농 정착금 지원(2차)	11,6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6월분)	1,080	
	국제농업박람회 농산물 전시판매관 운영(부스사용료)비 지급	6,270	
	20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보육시설 40%) 지원사업(6월분)	15,00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	2,748	
	2012년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954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1,028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5차)	9,455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 (2차)	2,000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신청(6차)	5,862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	25,000	
	영암군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급(2차)	13,598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3차)	2,200	
	2012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차)	33,300	
	2012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급	27,000	
	5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4,223	
	5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725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6월분)	7,360	
	2012년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6월)	5,52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6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5월)	2,520	
	201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50,000	
	2012년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500	
	집수리 봉사활동 소모품비 보조금 지급	2,500	
	수호천사 봉사활동 소모품비 보조금 지급	1,667	
	사랑의 집수리 보조금 지급	2,500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들이 보조금 지급	6,000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지원	46,530	
	돼지췌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8(이순균)	2,700	
	2012년 유기동물 보호운영비 1차 지급	2,000	
	2/4분기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	7,500	
	2012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2차 보조금 지급(영암축협)	31,257	
소 계	15건	187,880	
7월	도갑사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0	
	6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	2,000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4,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	1,000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6월분, 2차) 신청	2,125	
	모정행복마을 마을·사회적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보조금	8,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6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4,214	
	6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770	
	2012년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7월분)	5,520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7월분)	7,360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6월)	2,660	
	2012년 하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840	
	2012년 하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급	53,431	
	돼지씨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 보조금집행-9(김동순)	3,960	
	향토산업육성사업	90,000	
소 계	17건	121,135	
8월	2012년 삼호문화의집 운영보조금송금	27,000	
	추기전통제례문화 보급지원 보조금지급	6,900	
	2012 추기석전대제 보조금지급	3,000	
	2012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	3,0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지급(7월분)	1,080	
	7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	21,000	
	7월분 귀농정착금 지급(2차)	3,6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8월분)	1,08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	3,200	

(단위 : 천 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8월	2012년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8,552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신규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20,449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지원금 지급	2,200	
	7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금	720	
	7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4,234	
	2012년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8월분)	5,520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8월분)	7,360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7월분)	2,240	
소 계	25건	226,176	
9월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10,000	
	영암문인협회 보조금	3,000	
	영암술문학동인회 보조금	3,000	
	2012 문화바우처사업 보조금	17,619	
	8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군서	1,800	
	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포장재 지원	11,354	
	8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삼호,금정,학산	6,800	
	농특산물 직거래관측행사 지원	1,380	
	8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덕진,시종,도포,서호,미암	9,8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9월분)	1,08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8월분 귀농정착금 지원(4차)-영암, 신북	6,400	
	2012년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8차)	8,552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 (주)에너텍)	1,000	
	12년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신규-2차)	20,205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2차)	25,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신흥콘크리트, 준아트)	2,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진양ENG)	1,000	
	신한옥건축기술자 양성사업(위탁관리비) 보조금	50,000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4,259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677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18,000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9월분)	7,360	
	2012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9월분)	5,520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8월분)	2,870	
	3/4분기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지급	7,500	
소 계	20건	144,637	
10월	제8회 전국화가 월출산 스케치 행사	20,000	
	1,2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	△400	
	9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	15,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0월	9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영암, 덕진	4,800	
	9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시종	4,600	
	2012년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9차)	8,259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에너지)	1,3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준아트)	1,000	
	'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10,065	
	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신규3차- 예담은규방문화원)	8,327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1차)	25,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주)신흥콘크리트)	1,0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진양ENG)	1,000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677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보조금 지급	4,259	
	제29회 월출학생종합예술제 및 방과후학교 성과발표회 보조금	18,000	
	2012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0월분)	5,520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0월분)	7,360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9월분)	2,870	
	제6회 왕인국화축제 자원봉사단체 지원 보조금	6,000	

(단위 : 천 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29건	545,105	
11월	전통문화계승보존지원	2,000	
	전통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	2,326	
	아동안전지도 제작(2차)	15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 지급(10월)	1,080	
	9월분 귀농정착금 지원(4차)-도포	3,00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군서농협)	1,500	
	10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 삼호,덕진,금정,시중,군서,서호,학산	17,600	
	10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도포	2,80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지급(11월)	1,080	
	10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영암,신북,미암	8,000	
	2012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경상) 지급	320,000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	6,333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준아트)	1,300	
	'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9,110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8,922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급(2차)	25,000	
	2012년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신흥콘크리트)	1,2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진양ENG)	1,3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10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677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보조금 지급	5,428	
	2012년 사랑의 김치담그기 보조금 지급	10,000	
	2013년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4,685	
	2012년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54,880	
	2012년 어르신체육지도자 배치사업(11월분)	5,520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1월분)	7,360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10월)	3,080	
	한국산림복합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8,000	
	농업경영인회 콜 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28,650	
소 계	83건	1,571,019	
12월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5,353	
	20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94,059	
	2012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보육시설 40%) 지원사업	45,61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통합 RPC)	15,713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보조금 지급	37,50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지원(군서농협)	3,648	

(단위 : 천 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11월분 귀농정착금 지원(1차)-덕진,금정,군서,서호,학산	11,000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군서농협)	2,422	
	2012년산 벼 수탁판매사업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65,000	
	20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지료(보육시설 40%) 지원사업(11월분)	14,698	
	20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11월분)	118,971	
	11월분 귀농정착금 지원(2차)-삼호, 도포, 미암	6,400	
	11월분 귀농정착금 지원(3차)-신북,시중	8,200	
	마을 경관보전 직불제 활동비 지원	25,949	
	귀농인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4,000	
	달마지쌀골드 포장폴하전 품종순도검사 지원	9,000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영암군농협통합 RPC)	1,547	
	11월분 귀농정착금 지원(4차)-영암	3,800	
	2012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1,200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비 지원	150	
	2012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지급(12월)	1,080	
	'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7,656	
	'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5차)	9,632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신흥콘크리트)	1,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12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22,726	
	지역자율방재단 정기교육	4,816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4,259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4대보험료 지급	677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4,310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퇴직금) 지급	5,504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보조금(4대보험료) 지급	574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3,000	
	2012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2월분)	7,360	
	2012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2월분)	5,520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11월~12월)	6,090	
	2012년 스포츠바우처 기획사업 보조금 지급	3,052	
	2012 전남 한우경진대회(한우품평회) 참가지원	930	
	2012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지원 보조금 지급 (덕진농협 외1)	8,620	
	2012년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46,383	
	향토산업육성사업	145,000	
	2012 젓소품평회 참가지원 보조금 지급(박충남)	1,100	
	제1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회 행사지원 보조금 지급	2,024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12월 귀농정착금 지원(2차)-영암,덕진,금정,도포	9,800	
	12월 귀농정착금 지원(1차)-시종,서호,학산	10,400	
	2012년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참가 행사비 지원	7,920	
	2012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김성윤 농가) 보조금 지급	4,000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지원(통합 RPC)	2,244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지원(군서농협)	3,692	
	12월 귀농정착금 지원(3차)-삼호,신북,군서,미암	9,200	
	2012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지원 사업비 지급	3,526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통합RPC)	1,845	
	201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2차)	60,200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보조금 지급	4,572	
	동계전지훈련팀 및 각종 스포츠리그 유치 지원	4,700	
	2012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폐업지원 및 잔존가치)	222,289	
	2012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22,348	
	2012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보조금(3차, 영암축협)	43,263	
	2012 쇠고기이력추적제(귀표장착비) 보조금 지급(전남낙협)	13,248	
	유기동물 보호비 지급 2차	1,400	
	2012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집행-2(배용희,김점술)	11,200	
	삼호문화의집 도서구입 및 도난방지시설치지원사업 보조금지급	30,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전남쌀 평생고객확보택배비 지원(군서농협)	404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박스 지원사업(1차)	6,660	
	2012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박스지원(2차)	10,040	
	달마지쌀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1차)	△65,881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2,396	
	2012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박성표외 5농가) 보조금지급	26,000	
	2011년 농업인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2차)	△13,136	
	영암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업(3차)	22,579	
	지역특화농업법인체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고이월)	35,000	
	201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보육시설 40%) 지원사업 (12월분)	32,029	
	201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사업 (12월)	83,522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신흥콘크리트)	1,300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보조금 지급	2,000	
	2012년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200	
	2012년 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18,000	
	2012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집행(시종 5)	28,000	
	2012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보조금집행-3(시종 5,군서1,도포 1)	39,200	

별첨 5 '12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98건	2,847,034	
소 계	6건	813,580	
1월	2012년(임진년) 신년인사회 보조금 지급	12,120	
	2012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비 보조금	731,000	
	제19회 세시풍속경연대회	8,000	
	신년 충혼탑 참배 행사 보조금 지급	1,350	
	2012 체육단체 경기출전	32,010	
	2012 생활체육활성화 지원보조금	29,100	
소 계	5건	134,500	
2월	제93주년 3.1절 기념행사 및 걷기대회 보조금 지급	4,500	
	제51회 전남체전 참가 우수체육선수 발굴 육성 지원	60,000	
	2012년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보조금(상반기) 지급	62,500	
	제22회 왕인박사 춘향대제 보조금 지급	3,500	
	남해신사 춘계 제례행사비	4,000	
소 계	7건	208,960	
3월	2012년도 민주평통 통일한마당 행사 보조금 지급	5,500	
	2012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비 보조금 집행	42,000	
	영보풍향제행사지원 보조금	5,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012년 궁도대회 참가	1,000	
	제51회 전남체전 참가 및 훈련 경비 지원	60,000	
	2012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보조금	91,960	
	2012년 알뜰나눔장터 행사 보조금	3,500	
소 계	11건	90,759	
4월	제10회 시종면민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4,850	
	읍·면민의날 행사(영암,신북,미암) 보조금 지급	14,550	
	재난구조대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1,019	
	6.25전적지 탐방활동사업 보조금 지급	3,880	
	전남 새마을가족 한마음전진대회 참석보상비 지급	3,500	
	도갑사 연등행사지원 보조금	20,000	
	2012년 봄철 상춘객 맞이 행사 보조금 지급	8,000	
	영암 사포계 소상사 궁도대회 보조금	2,460	
	덕진여사 추모제 보조금 지급	5,000	
	대도시 아파트부녀회 농촌체험행사 지원	7,500	
	제5기 왕인문해학교 한마당 큰잔치 행사 보조금 교부	20,000	
소 계	6건	46,784	
5월	읍·면민의날(서호,학산,삼호)행사 보조금 지급	14,550	
	한국자유총연맹군지회 고교생 민주시민교육사업 보조금 지급	2,134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개관식 행사비	10,000	
	제10회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	1,5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5,000	
	2012년 호국보훈의 달 추념행사 보조금 지급	3,600	
소 계	14건	262,885	
6월	바른생각 바른마음 실천을 위한 탐방 및 견문 사업 보조금 집행	1,940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 보조금 집행	1,745	
	월출산 삭도 설치 추진지원	9,700	
	기찬랜드 토요일콘서트 행사 보조금 지급	33,000	
	제21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지원	2,000	
	대통령배 2012 전국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 지원	6,000	
	2012년 6.25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5,000	
	제7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10,000	
	2012 군민생활체육협회장기대회 지원	75,000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50,000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지원(상반기)	18,000	
	전라남도 청소년 클럽대항 참가	4,000	
	2012년 영암군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보조금지급(2차)	37,500	
	2012년 제8회 장애인문화예술제 보조금지급	9,000	
소 계	2건	3,000	
7월	2012년도 여름 환경안내소 운영 보조금 지급	2,000	
	제2회 목포시장기 제8회 전국남녀궁도대회 참가 보조금	1,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6건	585,810	
8월	민주평통 베트남 탄라이 어린이집 준공식 행사 보조금	21,250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보조금 지출	10,000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행사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	550,000	
	제7회 의암주논개기 전국게이트볼대회	500	
	제13회 국무총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1,000	
	4-H회원 행사지원 보조금 지급	3,060	
소 계	12건	160,900	
9월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행사 보조금	20,000	
	제12회 한마음 어울마당 참가 보조금 지급	1,000	
	2012년 월출산 달맞이 공연	27,000	
	제7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48,500	
	제38회 남도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참가(청소년부)	9,000	
	제38회 남도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참가 보조금(일반부)	22,500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농촌체험행사 지원	2,000	
	제65회 21영암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지급	2,600	
	제66회 21영암포럼 운영 위탁금	3,300	
	2012 영암의날 생활체육야구행사 지원	5,000	
	제3회 영암군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 지원	5,000	
	보훈단체지원(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 지원)	15,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4건	284,000	
10월	제3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250,000	
	제38회 남도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참가(청소년부)	1,000	
	제38회 남도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참가(일반부)	1,000	
	왕인국화축제 국향콘서트 보조금 지급	32,000	
소 계	10건	88,610	
11월	면민의날 행사(덕진,금정,군서) 보조금 지급	24,200	
	2012년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보조금 지급	2,910	
	성탄트리설치 및 기념행사	28,500	
	제67회 21영암포럼 운영 위탁금	3,300	
	제1회 현무공김억추장군기 전국남여궁도대회 참가 보조금	1,000	
	2012년 자매결연 시군 체육교류 초청	1,800	
	2012년 자매도시 직원초청 친선축구대회 참가 보조금	2,000	
	6.25희생자 위령제 행사 지원	900	
	뚝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사업	20,000	
	2012년 남해신사 추계 제례행사비 지원	4,000	
소 계	15건	167,246	
12월	제3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보조금 지급	△24,236	
	영암군 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 보조금	8,640	
	2012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보조금	20,000	
	2012영암군 새마을회 평가대회 보조금	4,2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전남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보조금	1,000	
	2013 왕인문화축제 행사 대행사 선정 보조금 지급	100,000	
	2013년 영암호 해맞이 행사 보조금 지급	34,000	
	영암군 귀농귀촌 화합한마당 보조금 지급	2,000	
	2012년 여성자원봉사자 행사지원 보조금 지급	5,000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지원(하반기)	18,000	
	영암군농업인대회 보조금 지급	33,800	
	월출산 삭도 설치 추진지원	△5,654	
	2012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보조금	△26,960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1) 위령제행사 보조금	1,500	
	영암군농업인대회 보조금 지급	△4,044	

별첨 6 '12년도 기금회계 집행현황

◆ '12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14 건	9,920	
소 계	2 건	687	
3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00	
	유통식품수거보상금	287	
소 계	1 건	480	
4월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480	
소 계	1 건	210	
5월	어린이기호식품수거 보상금	210	
소 계	1 건	1,480	
6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80	
소 계	3 건	1,882	
7월	모니터요원활동비	48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200	
	유통식품수거보상금	202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1 건	163	
8월	어린이기호식품수거보상금	163	
소 계	1 건	480	
10월	모니터요원활동비	480	
소 계	4 건	4,538	
12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840	
	어린이기호식품수거보상금	480	
	모니터요원활동비	13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080	

◆ '12년도 농업발전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1건	470,000	
소 계	1건	470,000	
3월	농업발전기금 운영(융자금)	470,000	

◆ '12년도 사회복지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1건	11,700	
소 계	1건	11,700	
12월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	11,700	

◆ '12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68건	732,695	
소 계	1건	17,820	
1월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자재(염화칼슘)구입	17,82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1건	8,910	
2월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자재(염화칼슘)구입	8,910	
소 계	1건	8,910	
3월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자재(염화칼슘)구입	8,910	
소 계	4건	67,204	
6월	영암 삼호지구 농로 위험난간설치 공사	15,198	
	서호지구 농로 위험 난간 설치공사	17,352	
	학산지구 농로 위험난간 설치공사	18,554	
	행정리 수산리 배수로정비공사	16,100	
소 계	1건	34,291	
7월	행정리 수산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수로관)	34,291	
소 계	5건	35,073	
8월	재난대비 물품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구명함등)	2,530	
	하천내 지장물(갈대,잡목등) 제거 (영암읍, 미암면)	7,0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8월	장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수로관)	10,850	
	도포 봉호리 배수로관 정비공사 관급자재대(수로관)	8,389	
	월악리 하천정비공사 관급자재대 (레미콘)	6,304	
소 계	8건	110,157	
9월	하천내 지장물 제거(덕진,금정,도포, 삼호,서호)	17,500	
	봉호리 배수로정비공사	19,001	
	월악리 하천정비공사	16,880	
	월동천 정비공사 관급자재(수로관)	3,479	
	월동천 정비공사	17,431	
	소산 소하천 정비공사	17,926,	
	장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4,007	
	태풍 불라벤 피해복구 관련물품지원	3,933	
소 계	2건	15,004	
10월	장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2,989	
	미교소하천 석축설치공사	12,015	
소 계	12건	109,304	
11월	하천내 지장물 제거(신북면,군서면)	7,000	
	소산소하천석축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2,922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11월	원항리 하천호안정비공사 관급자재대(벤치플롭관)	16,183	
	겨울철 제설 자재 염화칼슘구입	8,910	
	신연리위험도로 낙석방지 설치관급자재대(벤처를폼관)	10,141	
	봉소리위험도로 옹벽 설치관급자재대(벤처를폼관)	13,622	
	금강리 배수로 정비공사설치관급자재대(벤처를폼관)	4,619	
	장암리 하천제방 공사 관급자재대(벤처를폼관)	8,297	
	원항리 하천비공사 관급자재대(벤치플롭관)	5,117	
	독천리 하천 퇴적토 준설공사 관급자재대(수로관)	11,106	
	수산리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대(벤치플롭관)	16,737	
	내동리하수관거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4,650	
소 계	33건	326,022	
12월	하천내 지장물 제거(시종면)	3,500	
	백계리 배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대(벤치플롭관)	9,303	
	월릉리 배수로정비및 와우리하천정비공사 관급자재대(벤처를폼관)	22,339	
	원항리 하천호안정비공사 관급자재대(벤치플롭관)	1,756	
	원항리 하천호안정비공사	12,559	
	내동리하수관거정비공사	15,795	
	침수흔적도 작성	24,662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월릉리 배수로정비및 와우리하천정비공사	14,057	
	백계리 배수로정비공사	5,410	
	수산리배수로 정비공사	4,538	
	신연리위험도로 낙석방지 설치공사	13,518	
	독천리 하천 퇴적토 준설공사	11,803	
	원항리 하천정비공사	11,964	
	대신천 소교량 난간설치공사	4,275	
	봉소리 위험도로 옹벽설치공사	5,923	
	금강리 배수로 정비공사	5,110	
	장암리 하천제방 공사	18,765	
	독천리 하천퇴적토준설공사 관급자재(레미콘)	1,262	
	겨울철 제설 자재 염화칼슘구입	17,820	
	학산은곡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7,978	
	덕진금호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4,720	
	군서 군서천 석축설치공사	21,516	
	군서면 장사리 옹벽구조물 안전진단	3,30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미교소하천 석축설치공사관급자재대(레미콘)	2,258	
	내동리 하수관거정비공사 관급자재대(철근)	2,411	
	내동리배수관거 정비공사 관급자재대(벤치플륨관)	14,697	
	월동천정비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3,730	
	군서 군서천 석축설치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3,464	
	내동리 배수관거정비공사	6,129	
	용천 소하천석축공사	19,341	
	월동리 배수로 및 와우리하천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2,027	
	장암리 하천제방공사 관급자재대(레미콘)	8,315	
	장암리 하천제방 관급자재대(철근)	1,777	

◆ '12년도 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142건	3,408,835	
소 계	7건	120,959	
1월	2011. 12월분 대불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납부	54,547	
	1월분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지급	330	
	1월분 대불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요금 납부	1,358	
	1월분 대불하수처리장 인터넷(kt) 요금 납부	622	
	1월분 대불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납부	7,027	
	2012년도 한국소방안전협회비 납부	180	
	대불슬러지소각시설 도시가스 요금 납부('11년 12월분)	56,895	
소 계	22건	295,908	
2월	대불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	2,049	
	대불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시험 분석비	910	
	대불오수1,2,3중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납부(1월분)	694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	2,200	
	대불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	2,316	
	1월분 대불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납부	53,666	
	2월분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지급	330	
	2월분 대불하수처리장 인터넷(kt) 요금 납부	649	
	대불오수1,2,3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납부 (2월~12월분)	7,634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2월	대불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용 차염소산나트륨 구매	2,501	
	2012년도 한국전력기술협회비 납부	145	
	대불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시험 분석비	10,010	
	2월분 대불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요금 납부	1,320	
	대불슬러지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비	15,750	
	대불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대기 자가측정 용역비(1월,2월)	4,385	
	대불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	15,759	
	대불중계펌프장 2월분 전기요금 지출	6,621	
	대불슬러지 소각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유지관리용역비	11,800	
	대불슬러지 소각시설 도시가스 요금 납부(1월분)	41,431	
	대불슬러지 처리시설 질소산화물 제거용 요소수 구입	3,083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급속침강제 조달 구매	50,222	
	대불산단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집행	62,433	
소 계	19건	197,886	
3월	대불하수슬러지처리시설 대기TMS 유지관리용 교정가스 구매	1,059	
	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300	
	대불 오수3중계펌프장 원격제어반 PLC카드 수리	301	
	대불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용 전기부품 구입	1,083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3월분 월정료 지출	33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3월	대불하수 수질TMS 유지관리 약품 구입	9,794	
	대불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소각시설 소모품 구매	1,738	
	대불하수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 체크밸브외 9품목 구매	1,562	
	대불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이송펌프 수선	16,811	
	대불하수처리시설(납기 3월19일) 전기요금 납부	52,898	
	대불 및 미중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8,750	
	대불중계펌프장 3월분 전기요금 납부(납기26일7건,02일2건)	6,054	
	대불하수처리시설 3월분 인터넷(kt) 요금납부	583	
	3월분 수도요금 납부(7건)	1,152	
	대불슬러지소각시설 도시가스 요금 납부(2월분)	45,815	
	대불하수처리시설 소각장 CCTV용 PDP 모니터 수선	87	
	대불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질소산화물 제거용 요소수 구매	1,514	
	대불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2,657	
	대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약취설비 기술진단비 집행	35,398	
소 계	18건	505,889	
4월	대불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수조세척설비 구매	74,200	
	대불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식여과 집진기 백필터 구매	15,66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4월	대불하수처리시설(대불배수펌프장) 소방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지출	2,100	
	대불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 지급	3,205	
	대불하수처리장 탈수기 자동용해장치 구매설치	46,200	
	대불하수처리시설 3월분 전기요금 납부	38,022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4월분 월정료 지출	330	
	대불하수처리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	347	
	대불하수처리시설 유해 위험기계 안전검사 수수료 지출	451	
	대불하수처리시설 변전실 비상전원용 축전지 구입	13,300	
	4월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납부	5,623	
	4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납부	604	
	대불하수처리시설 4월분 수도요금 납부	1,382	
	대불슬러지소각시설 도시가스 요금 납부(3월분)	32,641	
	대불하수처리장 3중계펌프장 제진기설치공사 관급자재구매설치	114,100	
	대불하수처리시설 전기배전반 구매설치	150,500	
	대불하수처리장 소각시설 보일러 보호용 청관제 구매	4,730	
	대불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용 차염산나트륨 구매	2,493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소 계	11건	383,683	
5월	대불하수관거 보수공사비 집행	260,000	
	대불하수처리시설 농축조 전동밸브 구매설치	7,359	
	5월분 대불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지출	330	
	4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납부	30,519	
	대불하수처리시설 5월분 수도요금 납부	1,371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송설비보수공사 관급자재 피스톤펌프 구매	59,500	
	대불산단 오수 제3중계펌프장 유입게이트 보수	18,400	
	5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 요금 납부	534	
	5월분 대불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납부	2,461	
	5월분 대불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납부	3,176	
	대불슬러지소각시설 도시가스 요금 납부(4월분)	32	
소 계	21건	973,503	
6월	대불하수처리장 탈수기 자동용해장치 보수공사비	5,850	
	대불하수처리장 탈수기 자동용해장치 구매설치	20,377	
	대불하수 소각재 비산방지 판넬 설치공사	17,830	
	대불소각시설 소각로 화염감시창 구입	840	
	대불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 소모품 구입	1,342	
	6월분 대불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지출	330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질소산화물 제거용 요소수 구매	1,542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6월	대불 하수처리시설 전기배전반 구매설치 감리용역	4,400	
	대불하수관거 보수공사비 집행	251,405	
	대불하수 제2중계 펌프시설 모터 및 펌프흡입관 수선	14,990	
	대불하수처리시설 최초침전지 생슬러지인발밸브 및 펌프 자동제어 보수	4,960	
	대불하수처리시설 고분자응집제(급속침강제) 구입	46,872	
	대불하수처리장 침사제거설비 보수공사비	50,000	
	5월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집행(납기25일 7건, 2일 2건)	5,116	
	6월분 대불하수시설 인터넷요금 집행(납기 25일 5건)	525	
	대불 하수처리시설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비 집행	1,875	
	6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수도요금 납부(7건)	1,599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000	
	6월분 용양오수중계펌프장 인터넷요금 집행(납기6월25일)	39	
	대불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수조세척설비 구매	32,711	
	대불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방류수로 에폭시 도장공사	10,900	
소 계	8건	75,299	
7월	대불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위탁처리비	1,494	
	대불하수처리시설 전기 배전반 구매설치	66,088	
	7월분 대불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지출	330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7월분 대불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납부(납기 25일 7건)	1,687	
	7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집행(납기 25일 6건)	564	
	열사용기자재 계속사용검사 수수료 집행	57	
	7월분 대불 오수2,3중계 전기요금 집행	3,299	
	7월분 수도요금 집행	1,779	
소 계	11건	220,357	
8월	대불하수처리장 침사제거설비 보수공사 관급자재 벨트 콘베어 구매설치	117,950	
	대불하수처리장 실험실 소모품 및 약품구매	4,201	
	대불하수 슬러지처리시설 대기TMS유지관리용 교정가스 구매	1,924	
	대불하수처리장 3중계펌프장 제진기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설치	50,165	
	대불하수처리장 3중계펌프장 제진기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설치	50,165	
	대불하수처리시설 농축조 전동밸브 제어설비(PLC) 설치	9,980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이송설비보수공사 관급자재 피스톤펌프 구매	26,243	
	대불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TMS 정도검사비 집행	2,923	
	대불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위탁처리비	3,295	
	8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수도요금 납부	2,686	
	8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납부	660	
	8월분 오수중계펌프장 월정료 지출	330	
소 계	3건	6,429	
9월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송설비 보수공사	5,307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9월분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지출	330	
	9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납부	792	
소 계	5건	4,917	
10월	9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수도요금 납부	1,840	
	10월분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보시스템 월정료 집행	330	
	건설기계(지게차) 정기검사 수수료 집행	38	
	10월분 대불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요금 집행	811	
	10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수도요금 집행	1,8980	
소 계	9건	537,091	
11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수질TMS정도검사 수수료지급(추가분)	1,196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0,000	
	대불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위탁처리비	2,732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식여과집진기 백필터 구매	20,246	
	대불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식여과집진기 인젝터 구매	9,474	
	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00	
	11월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보시스템 월정료 집행	330	
	대불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11월분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	806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11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수도요금 집행	2,106	
소 계	8건	86,914	
12월	대불하수처리장 침사제거설비 보수공사비	21,775	
	대불하수처리장 침사제거설비 보수공사 관급자재 벨트콘베이어 구매설치	51,849	
	하수처리장 수질 및 지정폐기물, 원소분석 시료 시험분석 의뢰	4,631	
	12월 오수중계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집행	330	
	대불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보조자재 구매	2,167	
	12월 대불하수처리시설 수도요금 집행	1,421	
	대불슬러지소각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유지관리용역비	3,930	
	12월납기 대불하수 전용회선 통신요금 집행	810	

별첨 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① 총괄

영암군 행사·축제 현황

(단위: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전통문화계승·보존·홍보	왕인문화 축제	'12.04.06 ~ '12.04.09 (4일간)	전통문화계승, 지역문화행사	904,618	42,000	862,618
2	"	왕인국화 축제	'12.10.27 ~ '12.11.18 (23일간)	국화전시회, 농특산물홍보	444,607	101,807	342,800
3	기타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	'12.10.27 ~ '12.11.01 (6일간)	한옥우수성홍보, 한옥하우징마켓	549,293	200,000	349,293
4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영암군민의 날	'12.10.29 ~ '12.10.30 (2일간)	문예·체육 행사	228,824	—	228,824
5	기타	하미술관 전시회 개최	'12.09.03 ~ '13.02.28 (6개월)	미술품 전기	66,302	—	66,302

② 세부 원가회계정보

1. 왕인문화 축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본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박사의 소통과 상생의 정신을 배우고 그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 4. 6 ~ 4. 9 (4일간) / 1997년 / 15회
- 사업내용 : 4개 부문, 69개 행사
 - 테마기획 프로그램(21개) : 메가퍼레이드 '왕인박사 일본가오!' 등
 - 참여체험 프로그램(37개) : 氣체조체험 등
 - 지역마케팅 프로그램(6개) : 氣찬들쇼핑몰(영암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관) 등
 - 웰빙투어 프로그램(5개) : 영암관광 1일 버스투어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904,618 (국비 42,000 , 군비 862,618)	
집 행 액	904,618	미개최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수익) ㉒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3.5%*	수탁기관 96.5%*			
계	904,618	31,618	873,000	계	42,000	862,618
인건비	6,100	6,100	-	보조금	국비	
행사직접비	458,829	-	458,829	시도비	-	
대외홍보비	195,992	19,400	176,592	사용료	-	
시설장비비	144,271	-	144,271	수익	-	
참가자보상비	99,426	6,118	93,308	기 타	-	
감가상각비	-	-	-	수익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 (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생산효과 543억원, 부가가치효과 239억원 ○ 고용유발효과 : 1,616명 ○ 무료입장객 수 : 512,900명 ○ 입장수익 : - 백만원
(근거) 2012영암왕인문화축제 평가보고서 (국립목포대학교 문화관광산업연구소)

2. 왕인국화 축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및 군 관광지등을 홍보, 농업소득창출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10.27~11.18(23일간) / 2007년 / 6회
- 사업내용 : 주전시관운영, 분화작품 140,000점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농업기술센터)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455,973 (군비)	347,168
집 행 액	444,498	346,609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㉑					사업수익(수익) ㉒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㉓=㉑-㉒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444,607	444,607	-	계		101,807	342,800	
인건비		10,000	10,000	-	보조금	국비	-		
운영비	행사직접비	369204	369,204	-		서비스요금	시도비		-
	대외홍보비	16,185	16,185	-	사용료 수익		101,807		
	시설장비비	43,109	43,109	-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6,000	6,000	-					
감가상각비		109	109	-					
기 타		-	-	-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4,600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500여명 ○ 유료입장객 수 : 15만명 ○ 입장수익 : 250백만원 (근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제시(자체심사)	○ 지역경제파급효과 : 2,200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300명 ○ 유료입장객 수 : 37,687명 ○ 입장수익 : 102백만원 (근거) 제6회 왕인국화축제 개최 결과 문화관광부 11월 1인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3.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옥산업의 대중화 및 한옥의 우수성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10.27~11.01(6일간) / 2010년 / 2회
- 사업내용 : 주제관, 한옥포럼, 한옥하우징마켓, 체험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550,000 (도비200,000, 군비350,000)	-
집 행 액	549,293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100%*
계		549,293	-	549,293	계	200,000	349,293	
인건비		6,100	-	6,100	보조금	국비		-
유 요 비	행사직접비	124,764	-	124,764		도비		200,000
	대외홍보비	96,890	-	96,89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시설장비비	217,246	-	217,246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					
감가상각비			-	-				
기 타		104,293	-	104,293	** 수탁기관 자체수 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500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100명 ○ 입장객 수(무료) : 5만5천명 ○ 입장수익 : - 백만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515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120명 ○ 입장객 수(무료) : 7만5천명 ○ 언론보도 : 총87회

4. 영암군민의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와 군민화합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10.29~10.30(2일간) / 1976년 / 37회
- 사업내용 : 군민의날 전야제, 기념식, 문예·체육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민의날 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250,000 (군비250,000)	110,000
집 행 액	228,824	107,383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	수탁기관 99%				
계		228,824	3,060	225,764	계		-	228,824
인건비					보조금	국비	-	
행사 비	행사직접비	145,772	2,560	143,212		시도비	-	
	대외홍보비	9,544	-	9,544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시설장비비	22,720	-	22,720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50,788	500	50,288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 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군민과 경향각지의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애향심과 영암 자긍심을 고취 ○ 지역사회발전 공로자 시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한 단체 및 개인에게 군민의상, 자랑스런월출인의상, 자랑스런공무원상,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로 자긍심 고취 ○ 문예·체육행사를 통한 군민화합과 건강증진 도모

5. 하미술관 전시회 개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술관 건립 개관기념 동강하정웅 기증작품 공개 특별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2.9.3~2013.2.28(178일간) / 2012년 / 1회
- 사업내용 : 개관기념 특별전「그리운 고향」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 없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1년
예 산 액	74,564 (군비 74,564)	-
집 행 액	65,545	-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계		66,302	66,302	-	계		-	66,302
인건비		-	-	-	보조금	국비	-	
여 외 비	행사직접비	9,642	9,642	-		시도비	-	
	대외홍보비	-	-	-	서 비 스 요 금		사용료 수익	
	시설장비비	45,276	45,276	-		기 타 수 익	-	
	참가자보상비	2,617	2,617	-				
감가상각비		5,214	5,214	-			-	
기 타		3,553	3,553	-	** 수탁기관 자체수 입(00조직위)		-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외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결 과
○ 무료 관람객 : 5천여명 관람(비영리사업)

용어 해설

- 재정공시관련 재정용어 해설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색 인

- 가용재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産)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 (事業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의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의존수입 (依存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산 (資産)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보전금 (財政補填金)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 (統合財政收支)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연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 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 (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性に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수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 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ext{예산대비 채무비율} = \text{지방채무 총규모} / \text{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관리되는 예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는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보전금(財政補填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정보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3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

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합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 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

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 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